2025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공정거래위원회

2025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성과관리 시행계획, 2025.3.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044-200-43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436호

목 차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5년도 정책 추진방향 ····· 4

1. 그간의 정책성과 ····· 4

2. 2025년도 정책 추진방향 ····· 5

Ⅱ.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 7

1. 공정거래위원회 일반현황 ····· 7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 9

Ⅲ. 세부 추진계획 ····· 13

전략목표 Ⅰ ····· 13

전략목표 Ⅱ ····· 44

전략목표 Ⅲ ····· 71

전략목표 Ⅳ ····· 106

Ⅳ. 환류 등 관련계획 ····· 137

1. 이행상황 점검 ····· 137

2. 평가결과 환류체계 ····· 139

【붙임】

1-1. 성과지표 현황 ····· 142

1-2. 관리과제와 국정과제·부처업무계획 등 연계 현황 ····· 149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5년도 정책 추진방향

1. 그간의 정책성과

1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시장환경 조성

○ **주력산업** 및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담합·독점력 남용·불공정 행위 시정을 통한 **시장경쟁 활성화**

*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과징금 931억원), ▲온라인 쇼핑몰 검색순위 조작(과징금 1,628억원) 등 시정

○ 시장진입·사업활동·혁신을 가로막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 ▲고급형 택시 차종 범위 확대, ▲중고차 사고이력 표시 개선, ▲반려동물 사료 분류 기준 신설

○ 시정방안 제출제 신설, 디지털 경제 반영한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정***

* ▲플랫폼 기업결합에 네트워크 효과 고려, ▲시장 획정 시 무료서비스, 다면시장 등 고려

2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강화

○ **납품단가 연동제 현장 안착** 지원 및 **기술유용행위 손해배상 한도 상향**(3배→5배)

○ 가맹점주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필수품목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종류·공급가격 산정방식 기재 의무화, ▲거래조건 협의제 도입

○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상생을 위한 **자율규제** 방안 도출 * 배달앱·숙박앱

* ▲배달앱 중개수수료 인하(9.8%→7.8~2.0%), ▲숙박앱 중개수수료 인하(하위 40% 입점업체 1%p)

3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

○ **디지털·신유형 거래** 소비자 보호 및 합리적 소비기반 마련

* ▲다크패턴 전자상거래법 규율, ▲해외직구 위해물품 피해 차단,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등

○ **국민 일상생활 밀접 분야** 소비자 권익 강화

* ▲게임 확률정보 조작, ▲아이돌굿즈 청약철회 방해, ▲결혼·쇼핑·여가업 불공정약관 등 시정

4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

○ **동일인 기준** 명확화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의 **합리적 조정** 추진

○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일반지주회사 **CVC 외부출자·해외투자 규제 완화** 추진

* CVC 결성 벤처펀드의 외부출자 비중(펀드별 40%→50%), 해외투자 비중(총자산 20%→30%) 상향

2. 2025년도 정책 추진방향

1 업무 추진 여건

□ **(경제상황) 체감경기 어려움 지속 상황, 민생경제 회복 긴요**

○ 누적된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내수 개선**이 **지연**되고,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 하방위험이 증가하는 등 **국민경제 불안정** 지속

* '25년 경제성장률 전망: 2.1%(OECD), 2.0%(IMF·KDI·ADB), 1.9%(한국은행), 1.8%(기재부) 등

○ 경기변동에 민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소비자 부담**이 가중되는 한편, 경제 불안심리에 편승한 **담합, 불공정행위** 발생 우려 상존

□ **(산업환경) 시장변화에 맞춘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노력 중요**

○ 주력산업 성장 둔화,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구조 전환 등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동력 발굴** 시급

○ 디지털 경제 시대에 영향력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 **방지** 및 **시장 공정화**를 위한 **경쟁질서 확립** 요구 증가

* (경쟁 제한) 자사우대 및 최혜대우 요구, (입점업체 피해) 대금 미지급 및 유용 등

○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확대, **소상공인** 자생력 저하 상황에서 **균형적 경제 발전**을 위한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긴요

□ **(정책여건) 공정거래정책 체감도 제고 및 신속한 현장안착 지원**

○ 국민들이 **민생경제 회복**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속도감** 있는 **공정거래정책 추진** 필요

○ 개선한 제도들이 **시장**에 조속히 **안착**하여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 점검·소통 활성화**

☞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지속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 시장 환경 구축에 중점을 둔 정책 추진**

2 업무 추진 방향

목표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

핵심 추진 과제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	▸ 하도급·유통 분야 중소·납품업체의 정당한 대가 보장 ▸ 가맹·대리점주의 사업여건 개선 ▸ 자영업자 보호장치 확충 및 경영애로 해소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경쟁 촉진	▸ 담합 및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공정경쟁 기반 확대 ▸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활성화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	▸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대책 추진 ▸ 디지털 거래 소비자 권익 강화 ▸ 신유형·글로벌 거래 소비자 피해 예방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 부당 내부거래 감시·제재 강화 ▸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 시장 자율감시 기능 확대 및 기업 부담 완화

추진 기반

사건처리 효율화 및 피해구제 강화

▸ 법집행 시스템 실효성 제고

▸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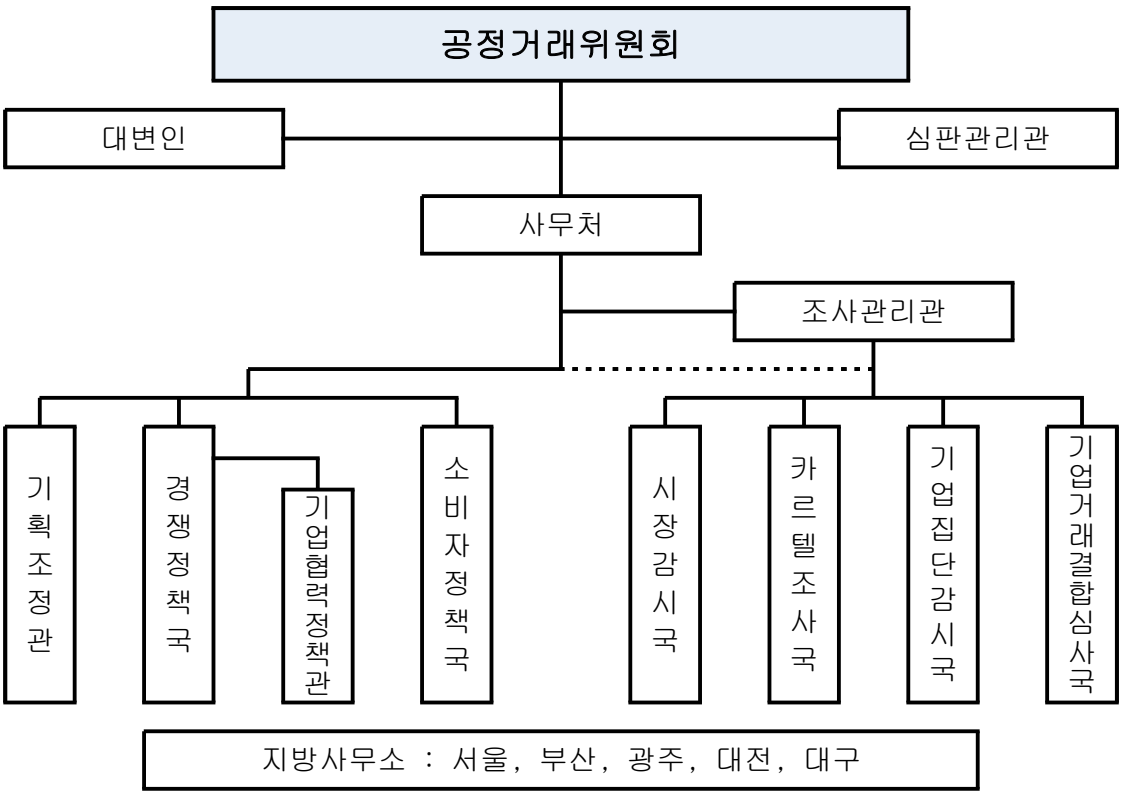
Ⅱ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1. 공정거래위원회 일반현황

(1) 조 직

□ **위원회** :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4인

□ **사무처** : 사무처장, 본부(6국 3관 1대변인), 5개 지방사무소



(2) 인 원

□ 정무직(2), 일반직(644), 별정직(1) 등 총 647명

(2025. 2월 기준, 단위: 명)

구분	정무직	고위공무원	3·4급	4급	4·5급	5급	6급 이하	별정직	전문경력관	계
정원	2	16	12	36	48	221	306	1	5	647
현원	2	14	12	41	42	220	287	1	5	624

(3) 재정현황

(단위 : 억 원)

구 분	'25	'26	'27	'28	'29
□ 재정사업 합계	1,634	2,095	2,238	2,210	2,286
ㅇ 총지출	1,634	2,095	2,238	2,210	2,286
(전년대비증가율, %)	5.0	28.2	6.8	△1.3	3.4
ㅇ 총계	1,634	2,095	2,238	2,210	2,286
(전년대비증가율, %)	5.0	28.2	6.8	△1.3	3.4
□ 총지출 구분	1,634	2,095	2,238	2,210	2,286
ㅇ 인건비	562	601	643	688	736
(전년대비증가율, %)	7.9	7.0	7.0	7.0	7.0
ㅇ 기본경비	89	92	95	98	100
(전년대비증가율, %)	6.0	3.4	3.3	3.2	2.0
ㅇ 주요사업비	983	1,402	1,500	1,424	1,450
(전년대비증가율, %)	3.4	42.6	7.0	△5.1	1.8
□ 예산	1,634	2,095	2,238	2,210	2,286
ㅇ (총)지출	1,634	2,095	2,238	2,210	2,286
(전년대비증가율, %)	5.0	28.2	6.8	△1.3	3.4
ㅇ 총계	1,634	2,095	2,238	2,210	2,286
(전년대비증가율, %)	5.0	28.2	6.8	△1.3	3.4
【일반회계】	1,634	2,095	2,238	2,210	2,286
ㅇ (총)지출	1,634	2,095	2,238	2,210	2,286
(전년대비증가율, %)	5.0	28.2	6.8	△1.3	3.4
ㅇ 총계	1,634	2,095	2,238	2,210	2,286
(전년대비증가율, %)	5.0	28.2	6.8	△1.3	3.4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1) 시행계획의 주요 특성

□ **중장기 성과관리 전략계획**('22년~'26년) 및 **'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25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마련

□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성과목표**를 수립하고,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시급한 사항**들을 **관리과제**로 구성

○ 이에 따라 올해는 9개 성과목표와 24개 관리과제 확정

□ 성과목표, 관리과제별로 업무 성과를 가장 잘 드러내는 **객관적, 결과지향적 성과지표를 설정**

○ 성과목표별 성과지표는 단위사업인 관리과제별 성과지표와 다른 지표 사용

- 국정과제 연관성 및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과제를 **「핵심 민생과제」**로 **집중 추진**('24년~)

○ 가급적 **산출·결과지표를 중심**으로 객관성 높은 지표를 선정하고, 정책 현장 방문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반영

○ 재정사업 연관 과제는 성과계획서와 공통지표를 사용하여 재정사업 평가와의 연계 강화

□ **관리과제별 추진 실적**의 **점검·환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추진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자체평가를 통한 조직 및 개인성과 연계, 정부업무평가 결과 반영 방안 등도 함께 마련

(2) 시행계획의 목표체계

【임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시장경제질서 확립

【비전】 공정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 4대 전략목표 】

Ⅰ. 규제개혁으로 혁신을 촉진한다.	Ⅱ. 공정한 경쟁원칙을 확립한다.	Ⅲ.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정당한 보상을 확보한다.	Ⅳ. 소비자 안전 환경을 조성한다.

【 9대 성과목표 】

1.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결합심사를 효율화한다.	1. 디지털 시장 등에서의 시장반칙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한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보장되는 거래환경을 조성한다.	1. 소비자 기만행위 등 불공정피해를 방지한다.
2. 대기업집단 규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2. 부당내부거래에 엄정히 대응하고, 소유지배구조 및 거래관행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한다.	2. 유통 분야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고, 甲-乙간 공정한 거래 기반을 마련한다.	2. 소비자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한다.
3. 공정거래정책 추진 기반 확충을 통해 법 집행 및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3) 목표 및 과제 현황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4	7	9	13	24	47

성과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Ⅰ. 규제개혁으로 혁신을 촉진한다.		
Ⅰ-1.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결합심사를 효율화한다.		
	① 시장분석 및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민생]**	국정 29-1
	② 경쟁제한 우려가 큰 분야의 기업결합 심층심사 강화	국정 29-2
	③ 선진화된 M&A 심사제도의 안착	국정 29-2
Ⅰ-2. 대기업집단 규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① 대기업집단 시책의 합리적 개선	국정 29-5
	② 시장의 투명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대기업집단 제도운영	국정 29-5
Ⅰ-3. 공정거래정책 추진 기반 확충을 통해 법집행 및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①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 및 분쟁조정 제도 활성화	국정 30-3
	② 엄중하면서도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회의운영 및 제도정비	업무계획 ⑤-가
Ⅱ. 공정한 경쟁원칙을 확립한다.		
Ⅱ- 1. 디지털시장 등에서의 시장반칙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한다.		
	①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공정한 거래여건 조성	국정 30-1
	② 혁신분야 및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불공정행위 및 부당 표시광고행위 시정 **[민생]**	국정 29-3
	③ 공정경쟁 확립을 위한 정책수립 및 교육·홍보활동	국정 29-3
	④ 담합 행위 시정 **[민생]**	국정 29-3
Ⅲ-2. 부당내부거래에 엄정히 대응하고, 소유지배구조 및 거래관행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한다.		
	①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 및 대기업집단시책·공시의무 위반행위 제재	국정 29-3
	② 소유지배구조 및 거래관행의 자발적 개선 유도	국정 29-3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Ⅲ.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정당한 보상을 확보한다.		
Ⅲ-1. 중소기업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보장되는 거래환경을 조성한다.		
	① 하도급분야 공정거래기반 조성	국정 30-2
	②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등 하도급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	국정 30-2, 국정 33
Ⅲ-2. 유통분야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고, 甲-乙간 공정한 거래기반을 마련한다.		
	① 가맹분야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민생]**	국정 30-2
	② 유통·대리점 분야 거래관행 개선 **[민생]**	국정 30-2
	③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시정	국정 30-2
Ⅳ. 소비자 안전환경을 조성한다.		
Ⅳ-1. 소비자 기만행위 등 불공정피해를 방지한다.		
	① 전자상거래・약관 분야 소비자피해 방지 **[민생]**	국정 30-1
	② 전자상거래분야 법위반행위 시정	국정 30-1
	③ 다단계・방문판매・할부거래 분야 소비자피해 방지	업무계획 3-가
	④ 다단계・방문판매・할부거래 및 약관 분야 법위반행위 시정	업무계획 3-가
Ⅳ-2. 소비자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한다.		
	①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	국정 30-5
	② 소비자권익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국정 30-5

Ⅲ 세부 추진계획

전략목표 Ⅰ	규제개혁으로 혁신을 촉진한다.

기 본 방 향

◇ 신규진입을 가로막고, 사업자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억제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을 통해 **사업자간 혁신경쟁 촉진**

o 독과점이 장기 지속된 시장에서 **경쟁을 제약**하는 **제도적 요인**을 **해소**하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 개선**

◇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고도화 등으로 급증한 **신산업 분야** M&A 등을 **효과적으로 심사**하여 **기업의 혁신 활동 뒷받침**

o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수준**의 M&A **절차 도입** 및 **심사 기준 정비**

◇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대기업집단과 독립·중소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절한 운영이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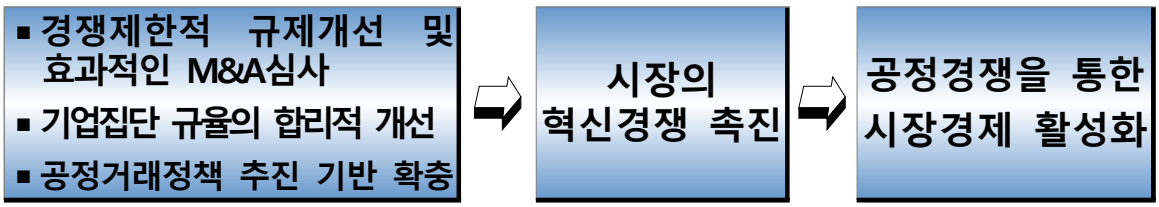
o 그간 경제규모 증가 등 **정책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 **변화된 정책환경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고, **규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제도 수용도 제고 및 불필요한 기업 부담 완화

o 대기업집단의 활발한 중소·벤처기업 투자를 위한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민간 중심의 역동 경제 구현을 뒷받침

◇ 기업의 **자율적 법준수** 및 **분쟁해결**을 장려하여 **법집행**의 **한계**를 **보완**

o **심의**에서 **전자적 문서 제출·송달·열람 시스템**을 구축하고, **효율적 심의와 실효성 있는 처분**을 위해 **행정적·제도적 개선**을 함께 추진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2	3	4	7	11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Ⅰ. 규제개혁으로 혁신을 촉진한다.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발굴 건수
		대기업집단 시책 관련 제도개선 건수
1.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결합심사를 효율화한다.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
		M&A 신고대상회사 만족도
	① 시장분석 및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경쟁제한적 규제개선과제 개선 추진
		시장분석을 통한 시장구조 개선방안 마련 건수
	② 경쟁제한 우려가 큰 분야의 기업결합 심층심사 강화	기업결합 심층심사 처리 건수
		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의 의견조회를 실시한 심사 건수
		기업결합 심사 관련 홍보 건수
	③ 선진화된 M&A 심사제도의 안착	기업결합 제도 관련 외부 소통 건수
2. 대기업집단 규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대기업집단 시책 업무 수행 노력에 대한 만족도
	① 대기업집단 시책의 합리적 개선	대기업집단 시책 관련 제도개선 등 정책수립 추진 실적
	② 시장의 투명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대기업집단 제도 운영	지주회사 전환 및 CVC 안착지원 건수
3. 공정거래정책 추진 기반 확충을 통해 법집행 및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CP 제도에 대한 만족도
	①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 및 분쟁조정 제도 활성화	CP 등급평가 신청 기업 수
		분쟁조정 조정 성립 및 조정안 제시 성과 정도
	② 엄중하면서도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회의운영 및 제도정비	심의 및 법집행 관련 제도개선 건수

전략목표 Ⅰ	규제개혁으로 혁신을 촉진한다.

(1) 주요내용

□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여 창의적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여 공정하게 경쟁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활력있는 시장경제 조성**

○ **진입규제, 사업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독과점을 형성하는 M&A**에 **적극 대응**

□ 그간 **정책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실효성도 제고

○ **법 집행 노력**과 더불어 **시장의 자율적인 소유·지배구조 및 거래 관행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

□ 기업의 **자율적 법준수** 및 **분쟁해결**을 **장려**하는 한편, **불공정 피해 기업**에 대한 **실효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법집행 한계 보완**

○ **심의** 문서의 **전자적 관리 시스템** 구축, 사건심의 **회의 운영 및 제도**의 개선을 통해 공정위 **법집행**의 **신속성·투명성** 제고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9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24	'29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과제 발굴 노력	55	59	57	58	58	59.1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대한 추진단계를 반영하여 점수화한 것으로, 측정산식에 따른 최근 5년치 평균점수(57.4점)에 3%를 상향한 59.1점으로 설정 * 시장구조개선정책과의 정원 감축 ('23년 1명, '24년 1명) 상황 감안	과제발굴 1건당 1점, 과제발굴을 위한 사업자단체 또는 전문가 등과의 간담회 1건당 1점	규제개선 추진계획 공문, 사업자단체·전문가 간담회 결과 보고서 등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9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24	'29			
대기업집단 시책 관련 제도개선 건수	5	6	6	10	8	4	'24년까지 제도개선 실적치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21년말 시행) 및 후속조치 개정수요 완료가 반영된 점, 대기업집단 시책의 대부분은 법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목표치를 지속 상향하기는 어려운 측면을 고려하여 '25년도 성과목표치는 5건으로 선정 ('25년)5건→('26년)5건→('27년)4건→('28년)4건→('29년)4건	법령, 고시, 예규 등 개정 건수(단, 다수 제도개선 건이 동일 법령 개정으로 이루어질 경우 복수 인정)	보도자료, 고시, 예규 개정안 등

성과목표 Ⅰ-1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결합심사를 효율화한다

(1) 주요 내용

□ **공정경쟁**을 통해 **혁신**과 **경쟁력 제고**가 촉발되고,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시장경제 기능**이 활발하게 작동될 필요

○ 진입제한,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및 **독과점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의 기반 조성

□ 사안에 맞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M&A를 심사**하여 **경쟁친화적 시장구조를 조성**하고, **혁신 경쟁**을 **촉진**

□ **변화하는 경제여건**에 맞추어 **M&A심사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심사의 **정합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2	'23	'24	'25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	81.5	80.3	79.9	80.5	최근 3년간 실적치의 평균인 80.5점을 목표치로 설정	11점 척도에 의한 설문조사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용역기관 실시)
M&A 신고대상회사 만족도	77.9	76.8	81.3	78.6	최근 3년간 실적치의 평균인 78.6점을 목표치로 설정	11점 척도에 의한 설문조사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용역기관 실시)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동시에 디지털·친환경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으로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 가중**

- 민간의 곤란을 덜어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 완화** 및 **경쟁친화적 시장환경 조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

○ 금리 인상에 따른 유동성 축소, 인플레이션, 고환율 등 **M&A 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급증**

- 반면, 경기침체기 자금난을 버티지 못한 **한계기업**들의 **구조조정** 성격 **M&A는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

○ 빅데이터·클라우드·인공지능(AI)·메타버스 등 **신산업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가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

→ **독과점 및 혁신저해가 우려**되는 **M&A**는 **심층심사**하되,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구조조정 성격의 **M&A**는 **신속처리**

□ 갈등요인

○ **독과점 이익**을 누리고 있는 기존 사업자와 잠재적 신규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갈등 여지** 상존

- **규제수혜집단**은 저성장 지속에 따른 일감·수입 감소 등을 이유로 규제개선에 대한 **반발가능성** 및 **강도** 모두 **증가**

○ **신산업 분야**의 **동태적인 시장환경** 하에서 여러 층위의 이해관계자들의 M&A에 대한 **다양한 의견 표출** 가능

○ **심사제도 정비** 과정에서, **사업자, 언론, 국회** 등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

□ **갈등관리 계획**

○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하고, **충분한 설득**을 거쳐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도출

- **언론**을 통해 규제개선으로 인한 **경쟁 활성화** 및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 적극적 **홍보**

- 필요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지자체 이견 조정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한 **최종 개선안 도출**

○ 다양한 경제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M&A에 대해서는 **시장조사, 경제분석, 외부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통해 경쟁제한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

○ **제도 정비과정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장의 수용성을 높이되,

- **반대의견**이 제시되는 경우,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공정위 입장**을 충분히 **설명**(필요시 간담회 등을 개최)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시장분석 및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Ⅰ-1-①) [민생]

□ 추진배경

○ **독과점적 시장**에서는 기존 사업자들이 **시장지배력 유지·강화**를 위해 **인위적인 진입장벽**이나 **왜곡된 거래구조**를 **형성**

- 독과점적 구조개선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신산업 혁신 동력 약화** 및 **소비자 피해 장기화** 우려

○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적극 발현되는 경쟁친화적 기업환경 조성으로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 특히 혁신기업의 진입이나 영업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이 중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금년에는 **고령 친화** 및 **친환경** 분야 등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규제개선과 함께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불필요한 **진입제한 규제** 등을 **집중 개선**

- **현장 중심 규제 발굴** 및 **개선안 마련**으로 구체적 개선 성과를 구현하고 **규제개선**의 **체감도·전문성**을 제고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소관부처·지자체 **실무협의**, **국무조정실** 주관 **이견 조정 절차** 등을 통해 개선 합의 도출

○ 금융시장 등 **장기간 독과점 구조**가 유지되어 국민후생을 저해하는 분야 및 **신산업**을 대상으로 **선제적 시장분석** 실시

- 경쟁제한적 제도·관행 등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경쟁영향평가 역량 강화**를 통해 규제개선의 신뢰성·전문성 확보

< '2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경쟁제한적 규제 발굴을 위한 자체분석, 시장 모니터링 등 실시	1~2월	
	'25년 주요분야 시장분석 추진계획 수립	3월	
	'25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추진계획 수립	3월	
	경쟁영향평가 역량강화 사업 계약체결 및 개시	1월	
	중요규제 경쟁영향평가 실시	연중	
2/4분기	시장분석 연구용역 추진	4월	
	규제개선 추진과제 확정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	4~6월	
3/4분기	규제개선 추진과제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계속)	7~9월	
	시장분석 연구용역(계속)	7~9월	
4/4분기	규제개선 추진과제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계속)	10~11월	
	시장분석 연구용역 완료 및 시장분석 보고서 발간	10~11월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관련 학술 심포지엄 개최	11월	
	규제개선 추진과제에 대한 최종 개선방안 확정(보도자료 배포)	11~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실무간담회 개최 등 의견수렴 실시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금융시장 분야 규제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25.2월
간담회	경쟁제한 규제개선 관련 소관부처 의견수렴 위한 간담회	'25.9월
간담회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을 위한 학술 심포지엄	'25.11월

□ 기대효과

○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으로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촉진하여 **혁신성장**의 기반인 **경쟁친화적 시장환경 조**성

○ 특정 산업에 대한 **시장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시장상황 파악** 및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여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4	'25
시장구조개선(1261Ⅰ-1-일반재정②)			
경쟁제한규제개선(340)		6.42	6.2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2	'23	'24	'25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 개선 추진	87.1	89.0	89.0	88.4	발굴된 과제개선에 대한 추진단계를 반영하여 점수화한 것으로 측정산식에 따른 최근 3년치 평균 점수(88.4점)로 설정 * 동 지표의 질적지표(합의비율)의 경우 상승 한계치가 존재하며 개선과제 발굴건수 실적이 높아질수록 달성이 어려워지는 특성이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 * 시장구조개선정책과는 '23년과 '24년에 걸쳐 정원감축에 따라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음	합의비율[(개선과제 ÷ 발굴과제)×100] 1%당 1점, 실무회의 · 조정회의 · 간담회 · 세미나 · 심포지움 1건당 1점	실무회의 · 조정회의 결과 보고서, 간담회 · 세미나 · 심포지움 결과 보고서, 규제개선 결과보고서, 보도자료
시장분석을 통한 시장구조 개선방안 마련 건수	3	3	3	3	시장분석 보고서 및 시장분석연구회 활동을 통해 시장구조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추진한 결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1) 각 부처 등에서 운영 중인 제도를 분석하여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한 건수와 2)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을 조사·제재하는데 필요한 시장분석 정보 등을 사건부서에 제공한 건수를 합산하여 측정하므로 폭넓은 데이터 수집 및 다각적인 분석을 요하는 높은 업무 난이도를 고려하여 전년도 실적과 동일한 3건을 목표치로 설정	시장분석보고서 및 시장분석연구회를 통한 제도개선안 마련 건수 및 시장분석 정보제공 건수의 합	내부 보고 결재문서, 타 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공문, 사건부서에 대한 시장분석 정보제공 공문 등

2 경쟁제한 우려가 큰 분야의 기업결합 심층심사 강화(I-1-②)

□ 추진배경

○ 분석대상이 광범위하거나 시장획정 및 경쟁제한성 판단의 난이도가 높은 기업결합이 많아져* 경쟁제한 효과 입증이 보다 까다로워짐

* (예) 다양한 유형의 결합이 발생하거나, 시장점유율 등에 기반한 전통적 분석 기법으로는 분석에 한계가 있거나, 관련 판례·이론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 등

- 경쟁법이 과소집행될 우려를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심층심사 강화 필요

○ 한편,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 기업결합의 범위가 축소*('24.8.7. 시행)되는 등 심층심사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① PEF 설립, ②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 ③ 다른 회사의 임원 총수의 1/3 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 ④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합병되는 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경우는 기업결합 신고대상에서 면제됨

□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

○ 경쟁제한 우려가 큰 분야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층심사 강화

※ 디지털 경제의 특성이 잘 반영되도록 기업결합 심사방식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24.5.1. 시행)

-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간이심사 건은 신속히 처리하되,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심층심사 건은 자료 수집, 경제분석 등 적극 실시*

* 심사 과정에서 경제분석 부서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타당성 높은 심사결과 도출

○ 아울러, 기업결합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조회 활성화

- Market Test를 강화해 경쟁사 및 인접 시장 사업자 등 민생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자문 등 활용

○ 심사결과 및 경쟁제한성 판단 근거 등을 이해관계자·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보도자료·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

< ’2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주요 M&A 건에 대한 심사결과 발표	1~3월	
	2024년 기업결합 동향 분석·발표	2월	
2/4분기	주요 M&A 건에 대한 심사결과 발표	4~6월	
	기업결합 미신고 일제점검 실시	5~6월	
3/4분기	주요 M&A 건에 대한 심사결과 발표	7~9월	
	기업결합 미신고 소명자료 확인	7~8월	
4/4분기	주요 M&A 건에 대한 심사결과 발표	10~12월	
	기업결합 미신고 일제점검 적발업체 과태료 부과	11월	
연중	경쟁제한성 없는 기업결합의 신속한 심사 처리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상황 점검	-	
	기업결합 관련 신고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시정조치 대상 기업 현장방문을 통해 시정조치 이행 여부 확인 및 이행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의견 청취

○ 기업 및 로펌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심사 제도 및 주요 심사 사례를 소개하고, 심사방식 개선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현장방문	시정조치 이행점검을 위한 현장방문	’25.4분기
설명회	기업결합 설명회	’25.12월

□ 기대효과

○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사건에 대해 심사역량을 집중하여 경쟁적 시장구조 확립 및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2	'23	'24	'25			
기업결합 심층심사 처리건수	33	37	36	38	경쟁제한 우려를 적극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최근 3년간 평균 실적(35.3건) 대비 10%를 상향한 38건으로 목표치로 설정	국장 이상 전결 건수 및 안건상정 건수 합산(안건상정 후 기업결합 철회 건 포함)	기업결합신고 통합관리시스템, 사건처리시스템
이해관계자 · 전문가 등의 의견조회를 실시한 심사 건수	7	12	10	12	기업결합 심사 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최근 3년간 평균 실적(9.6건) 대비 20% 상향한 12건을 목표치로 설정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계부처 등 의견조회 건수	온나라 문서등록대장
기업결합 심사 관련 홍보 건수	10	11	12	12	최근 3년간 평균 실적(11건) 대비 10% 상향한 12건을 목표치로 설정	기업결합 심사 관련 홍보 건수	보도자료, 공정위 SNS 등

3 선진화된 M&A 심사제도의 안착(I-1-③)

□ 추진배경

○ **기업결합 신고·심사제도를 선진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이 **완료·시행**됨에 따라('24.8월), 시장에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 유형(PEF 설립, 1/3미만 임원겸임, 계열사 간 기업결합 등)에 대한 **신고를 면제**

○ 디지털경제 시대에 AI 등 **신산업 분야**에 기존 방식(주식취득 등)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기업결합**이 등장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스타트업의 핵심인력 영입, 라이선스 확보 등을 통해 상당한 영향력과 통제권 확보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새로운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시장과의 소통 강화

- **정비된 제도를 시장에 적극 홍보**하여, 사업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안착을 도모

· 사업자 대상 설명회, 국제기구 소통, 다양한 홍보수단(책자, 보도자료, 카드뉴스, 유튜브 컨텐츠, 기고 등) 활용 등을 통해 국내외 제도 홍보

- **전문가·이해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도 병행하여, **제도 활용 사례·성과**를 바탕으로 **제도보완 필요성 논의**

② 신유형 기업결합에 대한 규율 방안 연구 추진

- **AI 등 혁신산업**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신유형 파트너십 사례** 및 **해외 경쟁당국 대응**을 심층 분석하여 국내 제도에 대한 시사점 도출

· 학계 전문가, 해외 경쟁당국 실무자, 관련 사업자 및 법조인 간담회·면담 등 병행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업결합 **제도 개선 필요성** 및 **개선방안** 검토

< '2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신유형 기업결합 규율방안 연구용역 발주	2월	
	기업결합심사 동향 발표	2월	
2/4분기	신유형 기업결합 규율방안 연구 계약 체결	4월	
	시정방안 제출제도 운용 관련 간담회	5월	
	OECD 정기회의 기여보고서 제출	6월	
3/4분기	연구용역 관련 전문가 간담회 (1차)	7월	
	연구용역 관련 전문가 간담회 (2차)	9월	
4/4분기	신유형 기업결합 규율방안 연구보고서 완료	10월	
	기업결합 업무 설명회 (제개정 하위규범 내용 포함)	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현장 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해 기업결합 신고 대상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과 직접 소통하여 정책 홍보 및 제도개선 수요 발굴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시정방안 제출제도 운영 관련 사업자 의견 수렴	'25.5월
설명회	기업결합 업무 설명회 (제개정 하위규범 내용 포함)	'25.12월

□ 기대효과

○ **개정 법률**이 **원활히 시장에서 작동**하게 됨에 따라, 당초 의도했던 **기업결합 심사의 효과성 및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 혁신산업 분야에 **새롭게 등장**하는 **기업결합 유형**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심사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기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2	'23	'24	'25			
기업결합 제도 관련 외부 소통(간담회, 설명회, 해외 경쟁당국과의 접촉 등) 건수	-	-	11	10	'24년 신규지표로 10건으로 목표치 설정 이후 초과달성(11건)하였으나, 이는 법개정('24.2월)에 따른 다수 하위규정 개정 수요로 인한 점을 고려해 올해는 전년 목표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목표치 설정 * '23년 자체평가결과를 반영한 신규지표로서, 외부와의 소통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정책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 제도를 설명·홍보하는 설명회, 외국 경쟁당국과의 협의 등 형태를 불문한 다양한 방식의 소통 횟수를 성과지표로 설정	소통 횟수 측정	간담회, 설명회, 해외 당국 접촉 등 소통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성과목표 Ⅰ-2 대기업집단 규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1) 주요 내용

□ **기업집단 제도**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혁신 투자는 촉진하여 **시장경제 활력** 제고

○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한 **대기업집단 지정** 및 **계열회사 범위** 조정, **벤처기업 성장촉진** 등 대기업집단 시책의 합리적 개선

○ 대기업집단 **규율 회피 방지**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해 과징금 등 **제재 수단의 합리화** 추진

○ 관계기관 협의체 및 교육 등을 통해 지주회사 전환 및 CVC의 빠른 시장안착을 지원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2	'23	'24	'25			
대기업집단 시책 업무 수행 노력에 대한 만족도	82.3	80.2	81.7	81.7	최근 3년 평균치가 81.4점이며 등락 후 상향임을 감안하여 평균치에서 0.3점 상향한 81.7점을 목표치로 설정 * 대기업집단 시책은 방향성과 성과에 대한 정책고객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한 분야로서 이를 지속적으로 상향시키기 어려운 점을 감안	전문가 집단(50명)을 대상으로 11점 척도에 의한 설문조사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용역기관 실시)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대기업집단과 독립·중소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절한 운영이 중요

○ 경제규모 증가 등 정책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존재

□ **(갈등요인)** 대기업집단 규제는 재계·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대립하는 특성이 있어 제도개선 등의 추진상 어려움이 큼

□ **(갈등관리 계획)** 기업집단정책 네트워크를 통한 대기업집단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및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도록 노력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대기업집단 시책의 합리적 개선(Ⅰ-2-①)

□ 추진배경

○ 총수일가의 경제력 남용과 편법적 경제력 집중을 차단하고 공정 경쟁을 위한 시장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

○ 대기업집단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소유·지배 구조 및 경영행태를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시책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지속 개선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조정(공정거래법 개정)

- 경제규모의 성장 및 정책여건 변화에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은 '17년부터 지금까지 자산총액 **5조 원으로 고정**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정기준을 자산총액 10조원→GDP 0.5%로 旣변경('24년~)

⇒ 지정기준이 **경제여건 변화에 탄력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고정된 기준을 **GDP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과의 정합성, 물가상승률 등 他경제지표 대비 GDP연동방식이 안정적인 점 등 감안

② 독립경영회사에 대한 계열제외 범위 확대(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 기업집단 소속 **비영리법인 임원**이나 계열사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지배하는 회사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계열 제외**

  · 종래 **사외이사**가 **선임 前**부터 독립적으로 경영하던 회사만 계열에서 제외 ⇒ 사외이사 **선임 後** 신설 회사까지로 **확대**

  · 사외이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임원**이 경영하는 회사도 계열 제외 범위로 포함

③ 벤처기업 성장촉진 및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합리화

- 대기업의 **유망 벤처기업 발굴·투자**가 **활성화**되도록 CVC 규제 완화(공정거래법 개정)

  * CVC 외부출자(40→50%) 및 해외투자(20→30%) 상한 확대

- **완전모자회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규제**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부당지원·사익편취 **심사지침 개정** 추진

- **대기업집단** 개념을 **원용**한 **타부처 법령**의 적절성 검토 및 기업부담·사회적 후생 손실이 과도한 분야의 **제도개선** 추진

  * 부처 협업을 통한 개선방안 검토(~'25.上 기재부 공동 연구용역)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후 추진

④ 규제 회피 방지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강화

- 대기업집단 규율 회피 목적의 **탈법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합리적 제재 방안 마련(공정거래법 개정)

  * (現) 시정조치·형사처벌만 가능(과징금 부과 不可) → (改) 과징금 부과

- **부당 내부거래 행위**의 중대성·실질에 비례하도록 **과징금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법위반 억지력 강화(공정거래법시행령·과징금고시 개정)

  * (예) 현행 방식으로 지원금액 산출이 곤란한 사업기회 제공 행위의 과징금 산정 개선

- 민간 **벤처모태펀드*** 제도 도입에 따라 일반지주회사 CVC 관련 규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위제한 규정 보완** 검토(시행령 개정)

  * 다른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모태펀드로, 기존 모태펀드와는 달리 민간자본으로 결성되며 벤처투자법 개정으로 설립 허용('23.10월)

  ** CVC가 결성한 모펀드가 자펀드 출자를 통해 투자제한대상 회사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한 제도보완 필요

- 그간 TRS 관련 법원 판례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상 채무보증과 동일**한 특정 TRS에 대한 **제도 보완** (탈법행위 유형 고시 제정)

⑤ 기업집단정책 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합리적 제도개선

- 제도개선 과정에서 전문가·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

< '2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부당내부거래 과징금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완료	1월	
	완전모자회사 관련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3월	
	기업집단정책 네트워크 및 공시 네트워크 운영	수시	
2/4분기	계열제외 범위 확대. 탈법행위 과징금, 모태펀드 등 3개 과제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4월	
	TRS 관련 탈법행위 유형 고시 제정 완료	4월	
	대기업집단 원용규제 관련 연구용역 완료	5월	
	완전모자회사 관련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심사지침 개정완료	6월	
	기업집단정책 네트워크 및 공시네트워크 운영	수시	
3/4분기	대기업집단 원용규제 관련 타부처 법령 개선 추진	8월	
	계열제외 범위 확대. 탈법행위 과징금, 모태펀드 등 3개 과제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완료	9월	
	기업집단정책 네트워크 운영	수시	
4/4분기	기업집단정책 네트워크 운영	수시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기업집단 공시 담당자 등 이해관계자와 공시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여 공시 정보 효용성 제고 및 기업 부담 완화 방안 발굴

○ 분야별 전문가·관계부처·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계열제외 범위 확대. 탈법행위 과징금, 모태펀드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25.4월
회의	대기업집단 원용규제 관련 관계부처 협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25.8월
간담회	일반지주회사 CVC 규제 개선 및 현장 애로사항 수렴을 위한 민·관 공동 CVC 협의회 참석(공정위·중기부·CVC업계)	분기별
간담회	주요 대기업집단 정책 수립 관련 기업집단 정책네트워크(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포함) 간담회	수시

□ 기대효과

○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통한 기업부담 완화 및 제도의 실효성·수용도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2 '23 '24	'25			
대기업집단 시책 관련 제도개선 등 정책수립 추진 실적	(신규지표)	9	지난해까지 실적지표였던 제도개선 건에 더하여 국회, 및 이해관계자, 학계·전문가 등과의 소통 등 입법 추진 노력을 평가(전년도 자체평가 보완지적사항)할 수 있도록 소통 건수를 건당 0.5점으로 산술화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성과지표를 신규 설정하고, 금년 목표치를 총 9점으로 설정 * 대기업집단 시책의 대부분이 공정거래법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관련 규정 개정 횟수를 지속 상향하기 어려운 측면	법령, 고시, 예규 개정 등 제도개선 건당 1점, (다수 제도개선 건이 동일 법령 개정으로 이루어질 경우 복수 인정) 전문가 자문,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회의 건당 0.5점	보도자료, 법령, 고시, 예규 개정안, 공문 및 회의 안건, 회의 개최계획, 회의결과 보고자료 등

2 시장의 투명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대기업집단 제도 운영(Ⅰ-2-②)

□ 추진배경

○ 지주회사 체제 도입 후 지주회사 전환 및 안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반영하고 지주체제를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촉진하여 투명성을 제고

○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역동적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 지주회사에게 허용된 CVC 제도의 신속한 시장 안착을 도와 벤처투자 활성화 유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지주회사 전환 및 안착 지원

- 교육을 통하여 지주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자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숙지하도록 지원

- 지주회사 전환 및 운영 관련 가이드라인 제공

- 지주회사 운영 실태 점검 및 운영 효과 분석 발표

○ 지주회사 CVC 제도의 빠른 시장안착 지원

- 원활한 설립 지원 및 운영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중기부, 기재부, 금감원 등과 협의체 운영

- 업계 대상 일반지주회사 CVC 설립·운영 관련 교육 실시

- 일반지주회사가 CVC 설립·운영 검토과정에서 제반사항을 충분히 파악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 개정

○ 제도 운영 객체인 기업과의 소통 강화

- 설명회를 통해 제기된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 후 제도 운영에 반영하여 기업부담완화

< '2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계열신고 등 자료제출의 온라인 일원화 추진	1월~3월	
	집단 지정제도 운영 관련 현장교육 추진	2월	
2/4분기	지주회사 사업현황 보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4월	
	대기업집단 시책(지주 및 CVC 제도 포함) 현장교육 실시	5월	
	공정거래법상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현황 분석 공개	6월	
	CVC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6월	
	지주회사 및 소속회사의 현황 분석 공개	6월	
3/4분기	업계 대상 일반지주회사 CVC 설립·운영 관련 교육 실시	10월	
4/4분기	CVC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12월	
	일반지주회사의 CVC제도 매뉴얼 개정	12월	
	지주회사 및 소속회사의 현황 분석 공개	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자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숙지하도록 지원

- 질의응답 및 실무자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기업의 부담완화

○ 기업대상 지주제도 및 CVC(기업형 벤처캐피털) 제도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CVC 제도의 빠른 시장안착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이해관계자 등의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긴밀히 소통하고 이를 제도운영 시 검토

구 분	내용	세부일정
설명회	집단 지정제도 운영 관련 교육 추진	'25.2월
설명회	대기업집단 시책(지주 및 CVC 제도 포함) 교육 실시	'25.5월
간담회	관계부처(공정위·기재부·중기부·금감원) 협의체 간담회 개최	'25.6월
현장방문	여신금융협회, VC협회 현장방문	'25.6월
간담회	관계부처(공정위·기재부·중기부·금감원) 협의체 간담회 개최	'25.12월

□ 기대효과

○ 지주회사 전환 및 안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운영과정에서 기업 및 시장의 애로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파트와 공유함으로써 제도 개선 실효성 강화

○ CVC 안착 지원을 통해 대기업과 벤처기업 간의 협력 강화, 혁신 생태계 활성화, 투자 확대 등으로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2	'23	'24	'25			
지주회사 전환 및 CVC 안착지원 건수	-	-	-	8	최근 3년 평균 CVC안착지원 실적(6건) 대비 약 33% 상향한 8건을 목표치로 설정 * 지주 및 CVC 제도의 빠른 안착은 대내외적인 요인과 타 부처의 정책요인이 절대적임, 그럼에도 불구 제도운영 과정에서 지원활동을 적극적 수행 (지난 3년간 CVC안착지원 건수 매년 6건 달성)	①관계부처 협의체 회의 개최건수, ② 제도 홍보건수, ③ 업계 대상 교육 및 소통 건수, ④매뉴얼 개정 등 제도운영 개선 사항	보도자료, 개최 결과 보고・사진 등

성과목표 Ⅰ-3 공정거래정책 추진 기반 확충을 통해 법집행 및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1) 주요 내용

□ 기업의 **자율적 법준수** 및 **분쟁해결**을 **장려**하는 한편, **불공정 피해기업**에 대한 **실효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법집행 한계 보완**

○ 법위반 **사전 예방**을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 **자율적 분쟁해결** 제도 **활성화**

□ **심의** 문서의 **전자적 관리 시스템** 구축, 사건심의 **회의 운영 및 제도**의 개선을 통해 공정위 **법집행**의 **신속성·투명성** 제고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2	'23	'24	'25			
CP 제도에 대한 만족도	69.0	80.6	75.2	74.9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승하였다가 하강한 점을 감안하여 최근 3년 평균 실적을 목표치로 설정	11점 척도에 의한 설문조사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용역기관 실시)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현행 법체계상 과징금 등 **공정위 행정제재만**으로는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한계**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내실 있는 피해구제 절차·체계 마련**과 더불어,

○ 기업들이 준법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법위반예방 노력을 기울이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외부 요구가 증가

□ **(갈등요인)** CP 도입의 유인·혜택의 지속적 확대를 요청하는 기업들과 CP가 기업들의 과징금 감경 수단 활용 가능성을 경계하는 국회·전문가 등 지적이 상존

□ **(갈등관리 계획)**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강화, 전문가 네트워크 등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추진함으로써 공정거래 기반·생태계 조성에 노력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 및 분쟁조정 제도 활성화(Ⅰ-3-①)

□ 추진배경

○ 불공정 피해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고 내실 있는 피해구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증대

○ 공적 집행(불공정행위 제재) 외에 기업 내부 준법감시 기능 및 자체 분쟁해결 기능을 강화하여 불공정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

○ 또한,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도 병행 추진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자율적 내부준법시스템) **활성화**하여 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저변 확대

* CP제도 법제화를 통해 우수기업에 인센티브(과징금 감경 등) 부여

○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효과적인 분쟁조정 시스템 구축**하고, **분쟁조정기능 강화 필요**

- 6개 법률에 산재한 **협의회 운영** 및 **조정절차 등**을 **하나로 통일**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국회 통과 지원**

-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분쟁조정 시 **합리적인 조정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도모**

< '2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CP 자율준수관리자 대상 간담회	2월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국회 논의 지원	2월
	CP 등급평가 운영지침 개정	3월
2/4분기	제23회 공정거래의 날 개최 및 CP 우수운영기업 정부포상	4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	4월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국회 논의 지원	5월
	CP 심포지엄 개최	6월
3/4분기	공정거래조정원 간담회	8월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국회 논의 지원	9월
4/4분기	CP 제도 교육 및 설명회	10월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국회 논의 지원	11월
	CP 포럼 개최	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및 분쟁조정 제도 활성화를 위해 업계,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의견수렴 확대 실시

- 특히, CP 도입 및 운영, 분쟁조정 등 정책현장의 애로사항, 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수렴 필요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CP 자율준수관리자 대상 간담회 개최	'25.2월
심포지엄	CP 심포지엄 개최	'25.6월
간담회	공정거래조정원 간담회 개최	'25.8월
설명회	CP 제도 교육 및 설명회 개최	'25.10월

□ 기대효과

○ 기업 간 분쟁을 신속히 조정하여 양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점 도출시, 분쟁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구제 가능

□ 관련 재정 사업 내역

(단위 : 억 원)

	회계구분	'24	'25
경쟁촉진(Ⅰ-1-일반재정①)			
①선진 경쟁정책 추진(1231)	일반	17.9	19.5
· 대외활동 강화(311)		3.94	6.26
- CP제도 운영		0.46	0.4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2	'23	'24	'25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P) 등급평가 신청 기업 수	16	28	58	41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3년 평균 실적(34개)의 20%(7개)을 상향한 41개를 목표치로 설정	CP 등급평가 신청 기업 수의 합계	개별기업의 평가 신청서 등 관련 증빙자료
분쟁조정 조정 성립 및 조정안 제시 성과 정도	-	-	2,295	2,318	분쟁조정 신청 사업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성과 측정을 위해 조정 성립 및 조정안 제시 건수를 점수화하고, 각 조치유형 및 조정안 제시 여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점수 산출하고, '24년 실적이 그 전에 비해 대폭으로 증가하였으나, 5년('19~'24년) 실적 추세의 등락이 있음을 감안하여 '24년 실적 대비 1% 상향한 목표치 설정('24년 신규지표) * 조정안 제시는 분쟁조정 성립을 위해 사실관계 및 법률 검토 등 상당한 투입 노력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가중치를 가장 높게 부여하고, 성립, 불성립, 종결에 대해서도 각 조치유형별로 조정과정의 투입 노력, 조정 성과 등을 고려하여 유형별 가중치를 차등적으로 부여(조정성립 1점, 불성립 0.3점, 종결 0.1점을 1건당 부여) ** 최근 3년 평균 실적(조정안 제시 '22년 143건, '23년 135건, '24년 171건 / 조정 성립 '22년 1,202건, '23년 1,278건, '24년 1,450건 / 조정 불성립 '22년 339건, '23년 350건, '24년 465건 / 종결 '22년 1,327건, '23년 1,523건, '24년 1,925건)	분쟁조정 사건 처리유형별로 가중치를 부여한 점수의 합 * 조정안 제시 건당 3점, 조정성립 건당 1점, 조정 불성립 건당 0.3점, 종결 건당 0.1점을 각 부여하여 합계한 점수	분쟁조정협의회 의결 결과 및 결과보고서

② 엄중하면서도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회의운영 및 제도정비 (Ⅰ-3-②)

□ 추진배경

○ 불공정거래 사건이 **복잡·다양화**되고 처분에 대한 **불복**도 늘어나는 반면, **사건심의 인력**(위원·심결보좌)은 **한정**되어 효율적 심의와 실효성 있는 처분을 위해 **행정적·제도적 개선 노력을 강화**할 필요

- 전자문서 활용률 증가 및 비대면 행정절차 수요 증대 등을 고려 시 공정위 심의에서도 **전자적 문서 제출·송달 시스템 구축 필요**

- **신속한 처분**을 통한 사업자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 요구**가 계속 증대

- 의결서 공개 수준이 일관되지 않는 등 처분의 실효성·완결성 제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심의 문서의 **전자적 제출·관리·송달·열람 시스템 구축**

- 시스템 도입을 위한 **ISP 사업 집행 및 시스템 구축 예산 확보**

○ 국민의 알권리와 사업자의 영업비밀 보호 등의 법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의결서 공개 범위·기준 명확화**

○ **신속한 심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이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

- **(회의 운영)** 통상 전원회의가 개최되는 수요일에 전원회의가 없을 경우 대신 소회의를 개최하여 최대한 많은 사건을 심의

- **(제도 개선)** 과징금 납부 연장·분할 납부 신청서 개정 등 심의 효율화를 위한 사건절차규칙 개정

< '2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심의 문서의 전자적 제출·송달 시스템 도입을 위한 ISP 사업 착수	3월	
2/4분기	심의 문서의 전자적 제출·송달 시스템 도입을 위한 ISP 사업 계속	3~6월	
	현장소통 간담회	4월	
	의결서 공개 기준 관련 연구용역 사업 착수	5월	
3/4분기	심의 문서의 전자적 제출·송달 시스템 도입을 위한 ISP 사업 완료 및 구축 예산안 국회 제출	7~9월	
	의결서 공개 기준 관련 연구용역 완료	9월	
	현장소통 간담회	9월	
4/4분기	사건절차규칙(심의 관련 제도 개선) 개정	12월	
	의결 등 공개 지침 개정 및 의결서 공개 가이드라인 마련	12월	
	개편 제도 관련 교육 실시	12월	
상시	수요일에 전원회의 없을 경우 소회의로 대체	상시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심의 효율화 관련)** 이해관계자인 심의 당사자(사업자) 및 이를 대리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현장의견 수렴

○ **(처분의 완결성 제고 관련)** 의결서 공개 기준, 절차 등에 대해 심의 당사자(사업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현장의견 수렴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심의 효율화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	'25.2분기
간담회	처분의 완결성 제고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	'25.3분기

□ 기대효과

○ 심의 관련 문서의 전자적 제출·송달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사업자의 **불편함과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심의 과정 전반을 효율화**

○ 신속한 처분을 통해 사업자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

□ 관련 재정사업 내역: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2	'23	'24	'25			
심의 및 법집행 관련 제도 개선 건수	4	5	6	6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최근 3년치 실적의 평균치(5건) 대비 10% 상향 설정	법령, 고시, 예규, 지침 등 제·개정 건수 [법률의 경우 국회 제출(발의) 건수]	온나라 공문, 보도자료 등

전략목표 II	공정한 경쟁원칙을 확립한다.

기 본 방 향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에서 혁신경쟁이 끊임 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이 필수적**

o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독과점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담합행위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 시정조치를 병행**하여 사업자의 행태 변화 유도

- 경쟁사업자의 진입과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혁신적인 서비스의 출현을 가로막는 **반칙행위 차단**

o 비대면거래 확산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급증한 플랫폼 · ICT분야에 대하여 직접규제 보다는 **자율적 거래관행 개선 및 분쟁예방**에 중점을 두고 **금지행위 기준 차별화 및 연성규범 도입 등 균형감 있는 규율체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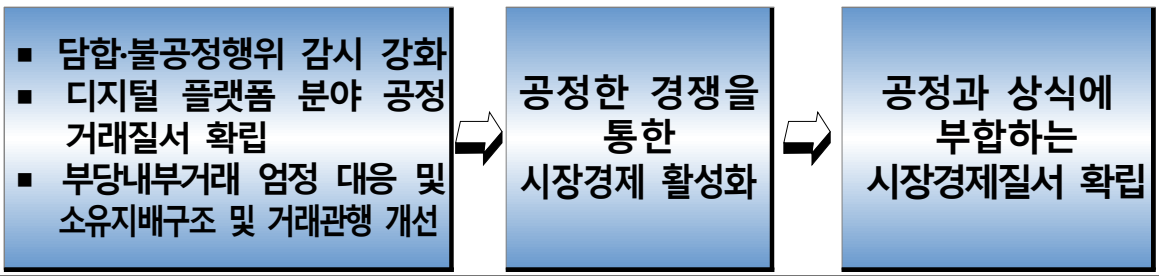
o 국민생활 밀접분야 및 소비자 안전분야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추진

◇ 기업들의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및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집단 규율체계 확립

o 중소기업 주력업종 및 민생밀접 분야의 **부당한 내부거래 엄정 대응**

- 법위반 징후 포착시 집중모니터링 강화 및 규제 회피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

o 대기업집단이 적시에 정확한 공시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시의무 이행 여부 점검**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2	2	3	6	12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Ⅱ. 공정한 경쟁원칙을 확립한다.		담합 및 불공정행위 조치 건수
		사익편취·부당지원행위 시정조치 건수
1 디지털시장 등에서의 시장반칙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한다.		독과점 폐해 시정 만족도
		카르텔 정책 만족도
	①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공정한 거래여건 조성	플랫폼 제도개선 추진률
		플랫폼-입점업체간 상생협력 방안 시행 또는 이행점검 건수
	② 혁신분야 및 국민생활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및 부당표시광고 시정	혁신 분야 및 국민생활 밀접 분야 공정거래법 사건처리 건수
		혁신 분야 및 국민생활 밀접 분야 표시광고법 사건처리 건수
	③ 공정경쟁 확립을 위한 정책수립 및 교육활동	담합, 독과점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 추진 실적
		법위반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대외협력 실적
	④ 담합 행위 시정	담합 사건처리 건수
2. 부당내부거래에 엄정히 대응하고, 소유지배구조 및 거래관행 자발적 개선을 유도한다.		대기업집단 거래행태 만족도
	①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 및 대기업집단시책·공시의무 위반행위 제재	사익편취·부당지원행위 사건처리 건수
		중대한 공시위반으로 조치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수
		대기업집단시책 관련(지주회사 행위제한 위반 포함) 사건처리 건수
	② 소유지배구조 및 거래관행의 자발적 개선 유도	대기업집단 현황 정보 공개 건수
		공시제도 교육 등 예방활동 실적

전략목표 Ⅱ	공정한 경쟁원칙을 확립한다.

(1) 주요내용

□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공정한 거래여건 조성

ㅇ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입점업체 및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ㅇ 플랫폼 분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자율규제 및 상생협력 방안의 시행

□ 독과점 남용 및 담합행위를 차단하여 창의적인 기업이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여 기존 사업자와 공정하게 경쟁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

□ 공정한 경쟁기반을 저해하는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하고 이를 엄정 조치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및 산업경쟁력 제고

ㅇ 법 집행 노력과 더불어 시장의 자율적인 소유·지배구조 및 거래 관행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8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24	'29			
담합 및 불공정행위 조치 건수	78	82.5	85.5	92	93	93	최근 3개년도 카르텔 및 민생밀접 분야(ICT 분야 포함) 불공정행위 조치건수 평균실적 (85.5+92+93)/3= 90.2 대비 3% 상향한 93건을 목표치로 설정 * 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사건은 조사대상이 많고 시장획정 및 경쟁제한성 판단 등 위법성 입증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난이도 높은 유형의 사건으로 불가피하게 상당한 처리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지속적으로 상향시키기 어려워 최근 3년간 평균 실적보다 목표치를 3% 상향하여 설정	카르텔 시정 건수 (경고 이상), 민생밀접 분야 불공정행위 시정조치 건수 (경고 이상 법위반 조치 및 연성집행 건수)	사건처리시스템 (의결서 또는 보도자료)
사익편취·부당지원 행위 시정조치 건수	4	4	5	4	4	4	부당내부거래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최근 5년 평균 실적(4.2건)과 동일한 4건으로 설정 * ①부당 내부거래는 기업집단 지배주주와 연관성이 높아 그 조사가 어렵고 위법성 성립 요건과 입증 정도도 엄격하게 요구되는 점, ②법위반에 대한 경고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서 사건처리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 ③ 부당 내부거래 규제의 주요 수범자인 대기업집단이 최근 5개년 다수 적발되어 부당 내부거래 혐의를 추가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 등	관련 분야 경고 이상 법위반 조치 건수	보도자료, 의결서, 공문 등

성과목표 II-1 디지털시장 등에서의 시장반칙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한다.

(1) 주요 내용

□ 시장의 혁신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행위,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광고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 특히 온라인 플랫폼, 반도체 등 핵심 주력산업, 국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의 반칙행위 집중 감시

○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제재할 필요

□ 시장경쟁을 원천적으로 제한하여 소비자 피해 및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담합행위에 대한 **예방활동 강화**

○ 해외 경쟁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해외법집행 동향** 및 **주요국 법제·절차**에 대한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사건기획·정책발굴·교육자료로 활용

□ 민생, 중간재, 플랫폼 등 **중점 점검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감시하고 **담합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2	'23	'24	'25			
독과점 폐해 시정만족도	67.4	82.7	79.0	77.1	실적이 등락하는 점 고려, 최근 3개년 평균 실적에 1% 상향한 77.1를 목표치로 설정	11점 척도에 의한 설문조사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고객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용역기관 실시)
카르텔 정책 만족도	68.0	85.0	84.2	79.9	실적이 등락하는 점 고려, 최근 3개년 평균 실적에 1% 상향한 79.9를 목표치로 설정	11점 척도에 의한 설문조사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고객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용역기관 실시)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플랫폼 중심 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플랫폼의 불공정행위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

-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우대·멀티호밍제한 등 독과점 남용행위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강화와 관련한 사회적 요구 증대에 경쟁당국의 적시 대응 필요

- 새롭게 성장하는 신유형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강화를 통해 플랫폼 분야의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 또한 긴요

○ 통신, 자동차, 반도체 등 핵심 주력산업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감시활동 강화를 통한 공정거래질서 확립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

○ AI워싱, 육아용품 부당광고 등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거짓·과장광고에 대한 집중감시 필요성도 증대

○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플랫폼, 반도체, 지식재산권 등 신산업 분야의 혁신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가 핵심과제

- 특히 신산업분야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사업자간 경쟁을 촉발하여 시장경제 기능이 활발하게 작동되도록 유도할 필요

○ 플랫폼, 반도체, 지식재산권 등 신산업분야의 혁신경쟁 촉진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로 부상

○ 불공정거래행위의 주요 원인이 되는 고질적인 갑-을 관계의 획기적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

○ 기업들은 지난 수년간 코로나 19로 입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담합을 선택할 유인 존재

- 물가 및 금리의 지속적인 인상 탓에 소비자들의 가계부담이 늘어만 가는 가운데 담합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다면 생활고가 가중되는 위험 초래

□ 갈등요인

○ 온라인 플랫폼 분야 변화속도가 빨라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사업자의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동태적 효과를 고려해야 하는 등 법집행 난이도가 상승하는 반면 피심인의 수용성은 점점 더 낮아짐

□ 갈등관리계획

○ 전문가 네트워크 및 의견수렴 강화, 해외 법집행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신산업 분야의 합리적인 법집행 방안을 강구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공정한 거래여건 조성 (Ⅱ-1-①)

□ 추진배경

○ 플랫폼 산업의 발전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쇼핑, 음식배달, 택시 호출 등)이 **편리**해지고, **거래비용**도 **감소**

○ 그러나, 그 이면에는 특정 플랫폼의 **시장 독식**으로 인한 스타트업 **시장퇴출** 및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등 시장 경쟁 과 혁신을 저해하는 폐해 발생

⇒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反경쟁행위를 주시**하여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공정한 거래여건 조성** 필요성 높아짐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플랫폼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보다 신속·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개선 추진

* ❶자사우대, ❷끼워팔기, ❸멀티호밍 제한, ❹최혜대우 요구 등 반칙행위

○ **중개거래 플랫폼**의 대금기한 준수, 대금별도 관리 등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국내·외 이해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하는 한편, 국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 모색

<상생협력 촉진을 통한 입점업체 애로사항 해소>

○ 주요 플랫폼 분야별로 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이 도출·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모바일 상품권** 관련 가맹점주 부담 개선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 **구체화** 및 **시행**

* 수수료 인하(5~14%→5~8%), 정산주기 단축(약 60일→30일)

-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 등 **배달앱** 관련 상생협력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 지원**

* 수수료 부담 완화(9.8%→2.0~7.8% 등), 입점업체 부담항목(중개·결제수수료, 배달비) 영수증 표기 등

- **숙박 플랫폼** 시장의 입점업체(숙박업자) 부담 완화 및 거래관행 확립을 위한 자율규제 방안*의('24.9.5.) **성과 점검**

* ▲입점약관 필수기재사항,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상생·부담완화 방안 등

< '2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플랫폼 분야 제도개선 관련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입법논의 지원	1~3월	
	플랫폼 분야 제도개선 관련 국내외 이해관계자·학계·전문가 의견수렴	2~3월	
	배달앱 상생협력 방안 시행	2~3월	
	모바일상품권 상생협력 방안 시행	3월	
2/4분기	숙박앱 상생협력 방안 성과 점검	4~5월	
	플랫폼 분야 제도개선 관련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입법논의 지원	4~6월	
	플랫폼 분야 제도개선 관련 국내외 이해관계자·학계·전문가 의견수렴	4~6월	
	배달앱 상생협력 방안 성과 점검	5~6월	
3/4분기	플랫폼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7~9월	
	플랫폼 분야 제도개선 관련 국내외 이해관계자·학계·전문가 의견수렴	7~9월	
4/4분기	플랫폼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10~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플랫폼 분야 정책 추진 관련 국내·외 이해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및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소통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플랫폼 분야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등	연중
토론회	플랫폼 분야 현황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등	연중
회의	플랫폼 분야 현안 점검 및 정책 조율을 위한 부처 협의 등	연중
회의	플랫폼 관련 대외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하기 위한 해외 경쟁당국간 논의 및 국외 이해관계자 소통 등	연중

□ 기대효과

○ 플랫폼 분야의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해당사자간 상생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혁신과 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 생태계 구축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2	'23	'24	'25			
플랫폼 제도개선 추진률	-	-	1	1	플랫폼 분야 제도개선 관련 부서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회 입법논의 지원 등 제도개선 추진 활동에 각 가중치 부여 (각 절차적 중요도를 감안하여, 가중치 설정을 통한 점수를 세부 측정방법으로 설정)	관계부처 협의 0.2 학계전문가 의견수렴 0.3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0.3 국회 설명 등 0.2	관련 온나라 공문, 보도자료, 회의개최 계획, 회의결과 자료, 출장증빙 자료 등
플랫폼-입점업체간 상생협력 방안 시행 또는 이행점검 건수	-	2	2	2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상생협력 방안 마련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플랫폼 분야별 상생협력 방안이 순차적으로 마련됨에 따라, 이행절차 실시 및 점검 등의 활동에 각 가중치 부여	플랫폼-입점업체간 상생협력 방안 시행 건당 0.5건 상생협력 방안 이행점검 건당 0.5건	보도자료, 회의개최 계획, 회의결과 자료, 이행점검 자료 등

2 혁신분야 및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불공정행위 및 부당표시광고 행위 시정(Ⅱ-1-②) [민생]

□ 추진배경

○ 시장경제 기능이 활발하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핵심 산업분야의 혁신 경쟁이 촉발될 필요

○ 아울러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민생 밀접분야에서 피해를 초래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응 필요

○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제재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음원스트리밍, 숙박앱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 집중 감시

- 관련 시장의 동태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법 집행 할 수 있도록 전문가·관계부처와의 협업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강화

○ 배달플랫폼, 식당테크* 등 자영업자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불공정관행 시정 및 실태조사 실시

* 예약·줄서기 앱, 원격주문 앱, 테이블 주문 기기 등 식당 운영을 돕는 신기술

- 불공정거래 관행의 신속한 개선을 위해 사업자의 자율시정 유도 등 연성집행 방식도 적극 활용

○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실시 및 조사·시정

- 결혼준비대행, 육아용품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및 AI워싱* 등 신유형 거래분야에서의 표시·광고법 위반 감시 및 시정

* 인공지능 기술과 무관하거나 제한적으로 활용하면서도 거짓·과장되게 광고하는 행위

< '25년도 과제추진 계획 >

항 목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실태조사 추진	1/4분기	AI워싱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사례분석	2월
		식당테크 분야 이용자·전문가 등 의견 수렴	2월
		식당테크 분야 실태조사 계획 수립	3월
		육아용품 분야 부당광고 실태조사 계획수립	1~2월
		육아용품 분야 실태조사 진행(소비자원)	3월~
	2/4분기	AI워싱 실태조사 진행	4월~
		식당테크 분야 실태조사 진행	4월~
	3/4분기	AI워싱 실태조사 결과 검토	8월
		식당테크 분야 실태조사 결과 검토	8월
		육아용품 분야 실태조사 결과 검토	8월
	4/4분기	실태조사 토대로 사건조사 여부 등 검토(공통)	9월~
불공정행위 및 부당 표시·광고 행위 시정	상시	혁신분야 및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표시·광고행위 조사 및 시정조치	-
		사업자 자율시정 유도 등 연성집행	-
		사건 및 이슈별 전문가·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	-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이해관계자 및 유관부처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혁신 분야 및 국민생활 밀접 분야 불공정행위 관련 조사 및 시정조치에 활용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AI시장에 대한 시장구조 이해 및 경쟁법 이슈 청취를 위한 간담회	'25.1분기
회의	모바일OS, 앱마켓 사업자 대상 시장현황에 대한 의견청취	'25.1분기
간담회	식당테크 분야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	'25.1분기
회의	디지털 기반 산업 분야 이해관계자(경쟁사업자, 고객사) 의견청취	'25.2~4분기

□ 기대효과

○ 혁신경쟁을 촉진하여 경제성장 및 소비자후생 제고 등 시장경제 기능 활성화에 기여

- 특히, 신유형 플랫폼 분야 독점력 남용행위를 감시·시정하여 혁신의 성과가 소비자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함

○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시정하여 민생 안정을 지원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

○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제품의 성능·기술 등 관련 부당 표시·광고를 시정하여 왜곡된 정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예방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 원)

	회계구분	'24	'25
독과점시장 환경개선(Ⅰ-1-일반재정①)			
■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330)		33.2	34.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2	'23	'24	'25			
혁신분야 및 국민생활 밀접분야 공정거래법 사건처리 건수	12.5	14.8	12.8	13.8	최근 3년간 ICT분야를 포함한 국민생활 밀접분야 공정거래법 사건처리건수(평균 13.4건)에 비해 3% 상향된 13.8건을 목표치로 설정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위 행위 관련 동의의결 등 포함) 관련 안건상정, 경고, 무혐의(심종 포함) 건수 를 1 : 0.5 : 0.25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	보도자료, 공문 (조사결과 통지 등), 의결서, 위원회 보고자료 등
혁신분야 및 국민생활 밀접분야 표시광고법 사건처리 건수	16.3	16.5	19	19	최근 3년간 ICT분야를 포함한 국민생활 밀접분야 표시광고법 사건처리 건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최근 3년 평균 처리건수(17.3건)에 비해 10% 상향된 19건을 목표치로 설정	표시광고법 관련 안건상정(동의의결 포함), 경고, 무혐의(심종 포함) 건수를 1 : 0.5 : 0.25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	보도자료 , 공문 (조사결과 통지 등), 의결서, 위원회 보고자료 등

3 공정경쟁 확립을 위한 정책수립 및 교육·홍보활동(Ⅱ-1-③)

□ 추진배경

○ **공정경쟁**을 통해 혁신과 경쟁력 제고가 촉발되고,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시장경제 기능**이 **활성화**될 필요

○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 독과점 남용,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적 교육 및 홍보** 병행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하는 **시책 적극** 추진

- AI 등 **신기술** 발전의 **주요 재원**인 **데이터**와 관련된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 저해**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분석함으로써, **데이터** 관련 **경쟁정책 방향** 등을 제시하는 **정책보고서** 발간*

* 관련 업계 실태조사, 연구용역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 및 정책 반영

- 중소기업 등의 **공동행위** 경쟁법 **적용 제외*** 관련 **해외** 주요 **경쟁당국** 법·제도 및 사례 등 **비교법적 연구** 수행

* 국회, 관련 협회 등에서 중소기업 등의 경성담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방안이 논의되는 중

- **웹소설** 분야에서 **창작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제정**(문체부 협업)

○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담합·불공정거래 등 **법 위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 실시

- **카르텔 업무 설명회** 개최, **공공조달** 발주 공무원·공공기관 및 입찰 참여 **조달업체** 등에 대한 **담합 예방 교육** 실시

- 주요 정책동향 **이메일링 서비스** 제공, SNS 홍보 등 병행

- 법 위반 **예방·감시체계 강화**를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 적극 홍보**

< '2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데이터 경쟁 이슈 관련 해외 경쟁당국 업무 협의	2월	
	데이터 관련 경쟁 실태조사 연구용역 계획 수립	2월	
	중소기업 등 경쟁법 적용제외 관련 연구용역 계획 수립	2월	
	EU 현지 진출기업들의 법 위반 예방 위한 교육 실시	2월	
2/4분기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계획 수립	4월	
	웹소설 표준계약서 제정(문체부 협업)	5월	
	조달업체 대상 입찰담합 예방교육 실시	6월	
3/4분기	데이터 분야 업계 실태조사 추진	7월	
	공무원 및 공공기관 대상 입찰담합 예방교육 실시	7월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 실시	8월	
4/4분기	공공 입찰담합 예방 교육 실시	10월	
	중소기업 등 경쟁법 면제 연구용역 결과보고회 개최	10월	
	ICN 카르텔 워크숍 개최	10월	
	카르텔 업무 설명회 실시	11월	
	데이터 정책보고서 발간	12월	
상 시	학계 등 전문가와 토론회	-	
	국회,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과 간담회 실시	-	
	해외 경쟁당국과의 회의 등 공조	-	
	카르텔 법집행 동향 이메일링 서비스	매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공정경쟁 시책**이 **효과적**으로 수립·운용되도록 외부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해외 경쟁당국 등과 **유기적 협업** 추진

○ 법 위반 **예방 교육**, 카르텔 **업무 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교육 내용 등에 대한 **피드백 반영** 및 **교육활동 강화**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등	데이터 경쟁 이슈 관련 해외 경쟁당국 업무 협의	'25.2월
	국회,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과 간담회 추진	상시
현장 교육	조달업체 대상 입찰담합 예방교육 실시	'25.6월
	공무원 및 공공기관 대상 입찰담합 예방교육 실시	'25.7월
설명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 실시	'25.11월

□ 기대효과

○ 담합, 독과점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억지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시장경제 활성화** 및 **소비자 후생 증대** 기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2	'23	'24	'25			
담합, 독과점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 추진 실적	9.5	12	12	12	최근 3년간의 평균 실적치인 11.2점에 비해 8% 상향된 12점을 '25년 목표치로 설정	법령, 고시, 예규, 지침, 가이드라인, 표준계약서, 정책보고서 등 정책 수립 건당 1점, 전문가·이해관계자 자문, 간담회 등 회의 건당 0.5점	보도자료, 내부결재 문서, 공문 및 회의 안건, 회의 개최계획, 결과 보고자료 등
법위반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대외협력 실적	14	14	14	**15**	최근 3년간의 평균 실적치인 14회에 비해 8% 상향된 15회를 '25년 목표치로 설정	법 위반 예방교육·간담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 해외 진출 기업 교육, 이메일링 서비스(매월), 신고 포상금 홍보 건수 등	교육, 홍보, 대외협력 관련 공문, 추진계획 및 결과보고 등 내부 보고서

④ 담합 행위 시정(Ⅱ-1-④) [민생]

□ 추진배경

○ 담합은 시장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가격 상승 등 광범위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므로 강도 높은 법집행이 필요

- 특히, 국민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 하면서 국민생활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분야에 대한 집중 감시·점검 강화 요구 증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시장활력을 저해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4대 분야(건강·안전, 의식주, 건설·중간재, 공공·조달 등) 담합 집중 점검

< 4대 중점 점검 분야 >

건강·안전	▸혈액·조직 진단검사, 생활폐기물 처리, 건축물 감리 등
의식주	▸돼지고기, 시스템 가구, 교복 등
건설·중간재	▸건물 바닥재·저수조, 아연도금 철선, 스테인리스 강선, 금속가공 윤활유 등
공공·조달	▸국고채 입찰, 공공기관 발주 기자재 등

< '2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상시	국내외 담합행위 적발 및 시정조치	-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 사건 조사 단계에서부터 국·과장 및 사건 담당자가 이해관계자(피심인, 신고인 등) 의견 청취 적극 실시(연 10회 이상)

○ 공공부문 입찰 관계기관 협의회를 실시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사전 예방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공공조달 입찰담합 적발률 제고(연 2회 이상)

-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운영 현황 공유 및 적발 사례 소개, 징후 분석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논의 및 건의사항 청취 등

- 지속적인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발주기관과의 협력 강화 및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개선으로 감시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

구 분	내용	세부일정
의견 청취	사건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수시, 연 10회 이상 실시
협의회	입찰담합 감시체계구축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연 2회 이상 실시

□ 기대효과

○ 담합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통해 시장 전반에 카르텔 법 집행에 대한 체감도 및 신뢰도 제고가 기대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 원)

	회계구분	'24	'25
카르텔 대응강화(Ⅰ-1-일반재정①)			
■ 카르텔환경개선(320)	일반회계	3.9	8.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2	'23	'24	'25			
담합 사건처리 건수	76	76	95	85	'22년부터 '24년까지의 실적('22: 76.4, '23: 76.0, '23: 95.4)을 고려하여, 최근 3년간 실적치의 평균값(82건)에서 3% 상승한 수준으로 목표치 설정 * 사건처리 건별 가중치 부여: 시정명령 이상(안건상정 포함) 1, 경고 0.6, 무혐의 0.4	조치유형별 가중치를 부여한 카르텔 사건처리 건수 * 측정산식= [시정명령 이상 건수(안건상정 포함)*1]+(경고 건수*0.6)+(무혐의 건수*0.4)	사건처리시스템, 안건상정 결재문서, 전결 결재문서, 보도자료, 의결서, 공문 등

성과목표Ⅱ-2 부당내부거래에 엄정히 대응하고 소유지배구조 및 거래관행 자발적 개선을 유도한다.

(1) 주요 내용

□ 공정경쟁 기반을 저해하는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및 시장의 자율 감시 기능 유지를 위한 공시점검

- ㅇ 일감몰아주기 및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점검, 특히 중소기업 주력 업종 및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부당 내부거래 적극 감시

- ㅇ 철저한 공시의무 이행 여부 점검을 통한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 강화

- ㅇ 대기업집단시책 운영의 근간을 저해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 대기업집단 현황 정보공개 및 법 위반 예방을 위한 공시제도 교육 등을 통한 거래 관행의 자발적 개선 유도

- ㅇ 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내부거래·지배구조 등 현황 정보를 주기적으로 분석·공개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능 강화

- ㅇ 공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교육함으로써 공시의 정확성, 투명성 강화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2	'23	'24	'25			
사건처리 고객만족도 (대기업집단 거래행태 만족도)	-	70.4	75.5	73.6	전년도 실적의 큰 폭 상승을 고려하여 2년간 평균 72.9점 대비 1% 상향한 73.6점을 목표치로 설정 (*24년도 목표치 71.1점 대비 3..5% 상향)	신고인·피심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처리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용역기관 실시)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관세 등 글로벌 무역 규제 및 고금리·고환율의 거시경제 환경속에 경기둔화에 직면한 기업들의 재무 안정성,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면서 집단 내 부실기업의 퇴출 방지 등을 위한 부당 지원 유인이 증가

□ 갈등요인

○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경제 여건 속에서 M&A 및 기업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기업측과 중소기업과의 공정경쟁 및 소비자 보호 등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당국 간 입장 차

□ 갈등관리 계획

○ 다양한 정보공개 및 공시제도를 활용하여 기업집단의 투명한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등 우선 기업 스스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공정한 경쟁기반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 환경조성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 및 대기업집단시책·공시의무 위반행위 제재 (Ⅱ-2-①)

□ 추진배경

○ 부당 내부거래는 독립기업의 시장참여·경쟁 기회를 박탈하고 그 산업의 경쟁력까지 떨어뜨리므로, 엄정한 법 집행 필요

- 또한, 부당 내부거래는 동일인 2세의 편법적인 기업집단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도 활용되므로, 집중 감시하여 제재할 필요

○ 부당 내부거래 행위 제제 및 공시제도의 근간이 되는 대기업집단 지정 등 시책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투명한 정보 공개 및 소유구조의 자발적 개선 기대

○ 공시제도가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및 부당내부거래 예방에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시함으로써 정확한 정보제공을 유도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 조사 및 제재>

○ 외식업·건물관리업 등 중소기업 주력업종 및 부동산·의료 등 국민 생활 밀접분야에서 부당 내부거래 적극 감시

○ 시장 퇴출 위기의 부실 계열사, 능력 미검증 신생 계열상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및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총수 일가 사익편취 중점 점검

○ 부당 내부거래 사건의 감시 및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집단 포털(eGroup)을 활용한 이상징후 탐지 시스템 운용 등 모티터링을 강화하고 전문가자문위원회 활용, 유관기관(국세청・한국은행 등)과 정보공유・협업 활성화

<대기업집단시책 위반행위 제재>

○ 대기업집단시책 운영의 근간을 훼손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제재

- 특히, 의도적인 지정・주식 소유 자료 누락 등으로 부당하게 지배력을 확장하려는 법 위반행위 엄정 제재

<공시의무 위반행위 제재>

○ 시장의 자율적 감시를 위해 적시에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대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공시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현장 밀착형 소통도 지속

- 특히, 미의결·미공시, 장기간 지연 등 중대한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

< '2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연중	대기업집단 시책위반·부당지원·사익편취 상시 감시	상시	
	법 위반행위 조사 및 제재	상시	
1/4분기	사익편취 규제 및 공시제도 설명회 개최	2월	
2/4분기	유관기관(국세청 및 한국은행) 공유자료 검토 및 분석	4월	
	반복적 법위반 공시대상기업집단 대상 집중 교육	4월	
	공시제도 설명회 개최	5월	
	공시이행실태 점검 개시	6월	
3/4분기	사익편취 규제 및 공시제도 설명회 개최	8월	
	공시의무 위반 여부 확인	8~10월	
4/4분기	사익편취 규제 및 공시제도 설명회 개최	11월	
	공시의무 위반 혐의사항에 대한 사전 의견조회	11월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대상 공시제도 교육	12월	
	공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부당지원·사익편취행위 및 대기업집단시책·공시의무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현장 교육·설명회 및 현장조사시 조사절차규칙에 보장된 피조사인의 권리 등에 대해 충실히 안내하면서 현장의견 수렴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현장 교육	현장조사시 피조사인의 권리 등 안내	상시
설명회	사익편취 규제 및 공시제도 설명회	'25.2월
간담회	공시정보이용자 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 간담회	'25.2월
간담회	공시매뉴얼 개정 방안 마련 간담회	'25.3월
설명회	반복적 법위반 공시대상기업집단 대상 집중 교육	'25.4월
설명회	대기업집단 대상 대기업집단 시책 및 공시제도 교육	'25.5월
설명회	사익편취 규제 및 공시제도 설명회	'25.8월
설명회	사익편취 규제 및 공시제도 설명회	'25.11월
설명회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대상 공시제도 교육	'25.12월

□ 기대효과

○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엄정 대응을 통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기업들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경각심 제고 기대

○ 공시점검을 통해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및 내부거래 관행을 개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2	'23	'24	'25			
사익편취·부당지원행위 사건처리 건수	8.7	6.1	9.3	8.8	최근 3년 평균 실적(8.03건) 대비 10% 상향한 8.8건으로 목표치 설정 * 24년도 목표치 설정 시 최근 3년 평균 실적(7.9건) 대비 3% 상향한 8.1건을 목표치로 설정 * (가중치 부여) 안건상정 건수 1.0, 경고 0.5, 심사절차종료 및 무혐의 0.3	조치유형별 가중치를 부여한 관련 분야 사건처리 건수 * 측정산식 = (안건상정 건수*1.0)+(경고 건수*0.5)+(심사절차종료·무혐의 건수*0.3)	사건처리시스템, 안건상정 결재문서, 전결 결재문서, 보도자료, 의결서, 공문 등
중대한 공시위반으로 조치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수	65	80	78	82	최근 3년간 중대한 공시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수의 평균치인 74.3에서 약 10% 상향한 82개를 목표치로 설정	기본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과태료를 부과받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수 *기본금액(건당)이 중요사항공시 395만원, 대규모공시 1,090만원 초과인 위반	보도자료, 결과보고서 등
대기업집단시책 관련(지주회사 행위제한 위반 포함) 사건처리 건수	22.2	23.3	25.0	24.2	최근 3년 평균 실적 23.5건 대비 3% 상향한 24.2건을 목표치로 설정 * 소유지배구조 및 거래 관행의 자발적 개선 유도를 위해 월별 집단 현황 분석자료 공개 병행 ※ 가중치 : 안건상정 1.0, 전결경고 0.5, 무혐의·심사절차종료 0.2 부여	실적=(안건상정 건수*1.0)+(경고건수*0.5)+(무혐의·심사절차종료 건수*0.2)	사건처리시스템, 안건상정 결재문서, 전결 결재문서 등

2 소유지배구조 및 거래 관행의 자발적 개선 유도(Ⅱ-2-②)

□ 추진배경

○ 대기업집단 시책위반 및 부당 내부거래 행위 등에 대한 사후적 적발·제재의 한계를 기업 스스로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여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

- 소유·지배구조 및 거래현황 등 관련 정보공개, 업계 대상 법 위반 예방교육 및 공시의무 이행 지원 등을 통해 업계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및 내부거래 관행 개선을 유도해 나갈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정보공개를 통한 자발적 개선 유도>

○ 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내부거래·지배구조 등 현황 정보를 주기적으로 분석·공개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적 감시기능 강화

* 주식소유현황(순환출자현황 포함), 내부거래현황, 지주회사현황(CVC현황 포함), 채무보증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

○ 지주회사 CVC 제도 도입에 따라 CVC의 투자·출자자·매각 내역 등 CVC 운영 정보 및 성과를 신규 분석·공개

<법위반 예방교육 및 공시의무 이행 지원 등>

○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 예방을 위해 대기업집단 공시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사전 예방활동 전개

- 공시교육, 사전 안내서비스, 국민신문고 회신 등을 적극 추진

< '2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연중	최근 관련 법제 및 시장변화가 반영된 신규 정보공개 항목 발굴	연중	
	공시의무 주요위반 사례 및 주의사항 안내	연중	
1/4분기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분석 · 공개	2월	
	대기업집단 대상 공시제도 교육	2월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2/4분기	반복적 법위반 공시대상기업집단 대상 집중 교육	4월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 공개	5월	
	대기업집단 대상 대기업집단 시책 및 공시제도 교육	5월	
	공정거래법상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현황 분석 공개	6월	
3/4분기	대기업집단 대상 공시제도 교육	8월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분석 · 공개	8월	
	대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 분석 · 공개	9월	
4/4분기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의결권행사 현황 분석 · 공개	10월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분석 · 공개	10월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분석 · 공개	11월	
	대기업집단 대상 공시제도 교육	11월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분석 · 공개	11월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 · 공개	12월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대상 공시제도 교육	12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 공개	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대기업집단 공시의무 위반 사전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현장 설명회 실시

-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맞춤형 법 준수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

- 설명회, 간담회를 통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향후 공시매뉴얼 개정 및 공시이행과정에 적극 반영

구 분	내용	세부일정
설명회	대기업집단 대상 공시제도 교육	'25.2월
간담회	공시정보이용자 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 간담회	'25.2월
간담회	공시매뉴얼 개정 방안 마련 간담회	'25.3월
설명회	반복적 법위반 공시대상기업집단 대상 집중 교육	'25.4월
설명회	대기업집단 대상 대기업집단 시책 및 공시제도 교육	'25.5월
설명회	대기업집단 대상 공시제도 교육	'25.8월
설명회	대기업집단 대상 공시제도 교육	'25.11월
설명회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대상 공시제도 교육	'25.12월

□ 기대효과

○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및 거래 관행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일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기업 투명성 강화, 규제 리스크 감소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2	'23	'24	'25			
대기업집단 현황 정보공개 건수	10	11	10	10	최근 3년 평균 실적(10.3건)과 동일한 10건을 목표치로 설정 * 매년 지정집단 및 소속회사수 지속 증가에 따른 분석량 감안 *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공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 분석·공개 등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 건수	대기업집단 현황 정보공개 건수	보도자료 등
공시제도 교육 등 예방 활동 실적	9.51	9.74	11.11	11.13	최근 3년간 공시제도 교육, 안내서비스, 국민신문고 회신 수 등을 수치화한 값의 평균치인 10.12점에서 10% 상향하여 11.13점으로 설정	공시교육 1점, 안내서비스 0.3점, 국민신문고 회신 0.01점	교육계획 및 결과, 안내메일(SNS), 국민신문고 회신 실적 등

전략목표 Ⅲ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정당한 보상을 확보한다.

기 본 방 향

◇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은 생산·고용에서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생적 성장 저해**

* 중소기업은 기업 수에서 **99.9%**(8,042천개/8,053천개), 종사자 비중에서 **81%** 차지(중기부, '22년 기준)

o 원자재가격이 급등하여도 상당수 중소기업은 **원자재가격을 협상**하지도 못하고, **납품단가 반영**을 요청하지도 못하여 **수익성이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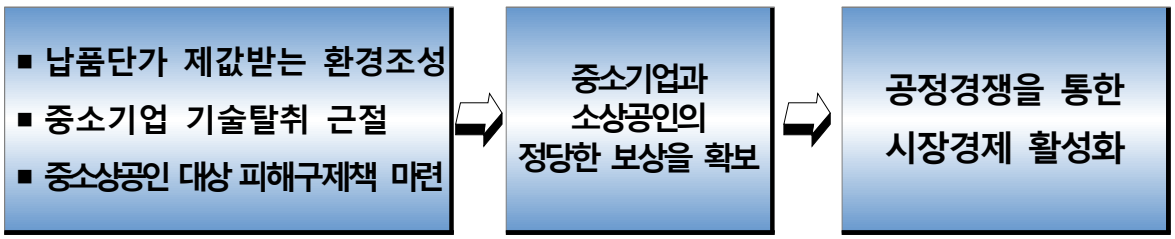
o 전속거래 등을 통해 우월적 지위를 갖는 대기업의 **부당 단가인하, 기술유용행위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상존**

o **가맹·유통·대리점분야**는 거래상 지위의 불균형이 고착화되어 그간 시장감시 노력에도 **불공정행위가 상존**

◇ 중소기업이 제값받는 여건을 조성하고, 대기업 및 가맹본부, 대형유통업체,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할 필요

o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등 제값 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

o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고,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2	2	4	5	12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Ⅲ.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정당한 보상을 확보한다.		하도급분야 법위반행위 조치 건수
		거래개선 체감도
1. 중소기업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보장되는 거래환경을 조성한다.		하도급거래 개선도
		동반성장 업무추진 만족도
	① 하도급분야 공정거래기반 조성	납품단가조정제도 등 하도급분야 제도개선 건수
		하도급정책 관련 현장소통 건수
		공정거래협약체결 기업수
	②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등 하도급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	기술유용 분야 법위반행위 사건처리 건수
		일반 하도급 분야 법위반행위 사건처리 건수
2. 유통 분야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고, 甲-乙간 공정한 거래기반을 마련한다.		가맹분야 고객만족도
		유통·대리점분야 고객만족도
	① 가맹분야 불공정거래관행 개선	가맹분야 제도개선 건수
		제도의 현장 안착 촉진 활동
	② 유통·대리점 분야 거래관행 개선	유통·대리점분야 제도개선 건수
		유통·대리점 정책 관련 분야 현장소통 건수
		유통·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 기업 수
	③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시정	가맹 분야 사건처리 건수
		유통·대리점분야 사건처리 건수

전략목표 III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정당한 보상을 확보한다.

(1) 주요내용

□ 일자리창출 및 국민경제의 견실한 성장의 기초가 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여건 조성

○ 중소기업이 비용과 혁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 글로벌 강소기업,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공정성장 기반 마련

○ 기술탈취 등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생적 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을 도모**

○ 가맹점주와 밀접한 분야의 **법·제도를 정비**하고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가맹점주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

○ 유통분야의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 실태조사, 분쟁조정 분석 등을 통해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상시 감시**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9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24	'29			
하도급분야 법위반 행위 조치 건수	485	497	98	643	439	425	최근 3개년 평균 사건처리건수(392건)를 '25년 목표치로 설정하고, 이후 매년 2%씩 목표치 상향 ('25년)392→('26년)400→('27년)408→('28)416→('29년)425	사건처리시스템에서 경고 등 조치요청건수 합산 (안건상정 기준, 하도급법 제12조의3 위반 건 포함)	사건처리시스템, 보도자료, 내부 결재문서 등
거래개선 체감도	88.8	90.3	89.7	86.8	83.0	85.5	가맹·유통·대리점분야 '25년도 거래관행개선 체감율 목표치를 전년도 실적에서 0.5% 상향한 83.5%으로 설정하고 이후 매년 0.5%p씩 목표치 상향 ('25년)83.5→('26년)84.0→('27년)84.5→('28년)85.0→('29년)85.5 * **29년 목표치**는 25년 목표치를 기준으로 매년 0.5%p 상향한 수치로, '21년 이후 지속 하향하고 있는 개선 체감도 지표의 매년 0.5%p 상향은 매우 적극적인 수치임 * 대리점 분야는 22년 서면실태조사부터 반영(21년까지는 6개 업종에 대해서만 실태조사)	매년 진행되는 서면실태조사(가맹·유통·대리점분야) 거래개선체감도 값의 평균값	보도자료, 서면 실태조사 결과자료

성과목표 III-1 중소기업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보장되는 거래환경을 조성한다.

(1) 주요 내용

□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등 정당하게 제값받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양극화 해결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새로운 동반성장 패러다임 확대

○ 또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중소 납품업체도 혁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 글로벌 강소기업,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공정 성장 기반 마련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2	'23	'24	'25			
하도급거래 개선도 (하도급정책 만족도)	72.7	67.0	57.4	66.4	연도별로 실적이 하락추세로 최근 3년 평균치(65.7) 대비 1% 상승한 66.4점을 목표치로 설정	7점 척도 설문조사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하도급서면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및 보도자료 등
동반성장 업무추진 만족도	74.1	77.4	75.4	76.4	연도별 실적이 3년 연속 급상승하였으나 최근 3년 평균치(75.6) 대비 1% 상향한 76.4점을 목표치로 설정	11점 척도 설문조사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용역업체 실시)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중소기업**은 **기업 수**(약 805만개)에서 **99%**, **종사자**(약 1,895만명)**비중은 81%**를 차지할 정도로 생산·고용 등의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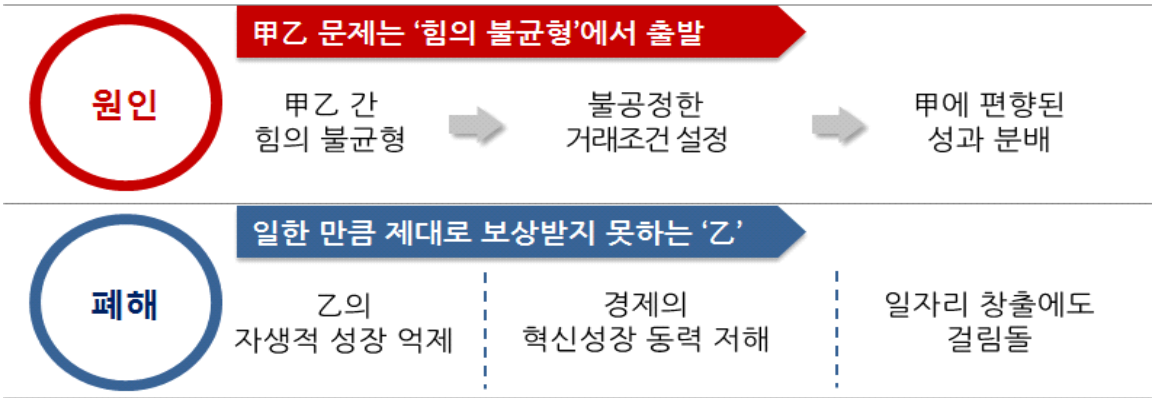
< 중소기업 기업수 및 종사자수(중소기업 기본통계, 2024년 중기부) >

구분		2021	2022
기업수 (천개)	전체	7,723	8,053
	대기업	10	11
	중소기업	7,713	8,042
	(비중, %)	**99.9**	**99.9**
종사자수 (천명)	전체	22,865	23,410
	대기업	4,372	4,454
	중소기업	18,492	18,956
	(비중, %)	**80.9**	**81.0**

○ 그러나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은 대기업 대비 평균 48% 수준*이며, 영업이익률도 대기업과의 격차가 커지는 추세**

* '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결과(통계청, 2024) ** (2014년) 1.3%p → (2021년) 3.5%p

□ 갈등요인



○ 전속거래 등을 통해 우월적 지위를 갖는 **대기업의 부당 단가인하, 기술유용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음

- 경제적 불안정성을 **가맹·대리점주, 납품업체**에 전가하려는 가맹본부·대리점 본사·대형유통업체 등의 **불공정행위** 우려도 존재

○ **대기업의 불공정거래관행**은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 나아가 **경제성장·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

○ 다만, 중소기업 · 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될수록 이를 규제 강화로 바라보는 **대기업 · 본사 등의 반발도** 예상되는 상황

□ 갈등관리계획

○ **지속적인 제도보완 · 확충, 법집행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를 제고**

○ **‘대 · 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 시책**을 통해 기업들의 준법의식을 함양하고 거래질서를 개선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기반 조성(Ⅲ-1-①)

□ 추진배경

○ 고물가 위기 속 원재료 가격 불안정이 지속됨에 따라 연동제의 원활한 작동이 더욱 긴요해질 것으로 예상 →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지원시책 등 다각적 노력 필요

* '23.7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하여 납품단가 연동제 전면 도입('24.1월 본격 시행)

- ▲하위규정 정비, ▲인센티브 부여, ▲맞춤형 컨설팅 확대 등 연동제에 대한 인식·정착 정도*를 제고할 수 있는 시책 추진

* 연동제 제도 인식 정도는 원사업자 82.6%, 수급사업자 68.9% 수준. 연동제 적용대상 거래가 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13.3%이며, 이 중 70.3%가 연동제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한 것으로 응답

○ 건설경기 위축,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 확대 등 거래환경 하에서 대금미지급*, 기술탈취 등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분쟁도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

*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후 대금미지급(14개 현장), 대금지급기일 변경(50개 현장), 결제수단 변경(12개 현장), 어음할인 불가(14개 현장) 발생 (대한전문건설협회)

- 수급사업자가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의 안정적 지급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납품단가 연동제 현장안착 지원

○ 연동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홍보** 실시

- 지방에 소재한 제조·건설업종 기업들에 대해 **찾아가는 현장 홍보**를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제도 안내

- **홍보영상 제작·모범사례 전파**(우수기업 공고, 우수사례 발표회) 등 대국민 홍보효과 극대화

ㅇ 시장의 지원요청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환류 및 개선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공정위-연동지원본부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연동지원본부를 통해 연동제 확산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주요 원재료 판단, 기준지표 개발 지원), **연동계약서 필수기재사항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등 현장에서 기업을 밀착 지원

② 기술유용 행위 근절 및 피해구제 활성화 추진

ㅇ 기술유용 피해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바로 **기술유용 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하도급법 개정)

ㅇ 기술자료 비밀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 탈취 예방을 위한 **매뉴얼 마련 및 교육·상담 실시**(약 600개 이상 중소기업 대상)

ㅇ 기술자료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 홍보 및 기술유용 관련 애로 상담(전국 주요 산업단지 입주업체 대상)

③ 하도급거래 및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ㅇ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하도급법상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과 **▲새로운 안전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포괄한 **종합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추진

*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발주자 직접지급제도

** 제3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수급사업자 대금 보호,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 도입 등

○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의 사법(私法)상 효력을 무효화**하여 부당특약 예방 및 수급사업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 제고(하도급법 개정)

-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명시**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대금수령 권한** 강화(부당특약 고시 및 부당특약 심사지침 개정)

* 계약이행·하자보수 명목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유보하는 금액

○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에 대한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교육·홍보** 강화

* 매 반기가 끝난 날로부터 45일 이내 공시하도록 의무 부과('23년 1월 시행)

○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 추진

- 업계 현실 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배포

-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및 모범사례 발표회 개최

④ 공정거래협약을 통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도모

○ 하도급 거래 환경을 반영하여 **협약이행평가 기준 개정**

- 평가항목 신설, 기존 항목 점수 조정 등 평가기준 재정비

○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관련 기업 실무자 대상 설명회,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 개최를 통해 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 확산 도모

< '2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 개최	1월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	2월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TF 발족 및 1차회의 개최	2월
	부당특약 무효화 관련 하도급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3월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TF 2차회의 개최	3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주요 국가산업단지 대상 순회상담(1분기)	3월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2/4분기	기술유용에 대한 금지청구제 도입 법안 국회 논의 지원	4월
	불합리한 유보금을 부당특약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부당특약 고시 개정	4월
	연동제 관련 기업 맞춤형 1:1 컨설팅 제공	4월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TF 3·4차회의 개최	4월
	결제조건 공시 관련 매뉴얼 개선 및 설명회, 연동제 설명회 개최	5월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대책 마련	5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실시	~6월
	연동제 관련 찾아가는 현장홍보 실시	~6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주요 국가산업단지 대상 순회상담(2분기)	6월
3/4분기	연동제 관련 홍보 콘텐츠 배포	7월
	중소기업 기술보호 교육 매뉴얼 마련	7월
	연동 필수기재사항 작성 가이드 마련	8월
	중소기업 대상 기술자료 비밀보호 컨설팅 실시	8월
	결제조건 공시 관련 매뉴얼 개선 및 설명회, 연동제 설명회 개최	9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주요 국가산업단지 대상 순회상담(3분기)	9월
4/4분기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11월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개정	12월
	연동제 주요 상담 사례집 발간	12월
	연동 우수기업 선정 및 모범사례 발표	12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주요 국가산업단지 대상 순회상담(4분기)	12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분석 발표	12월
	협약이행 평가 관련 모범사례 발표회	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하도급대금 연동제, 결제조건 공시제도 등 하도급법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의 현장 안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애로사항 청취

○ 업계의견 수렴을 위한 대·중소기업, 유관 단체 등 정책수요자 대상 설명회·간담회 개최

구 분	내용	세부일정
설명회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이행제도 소개 및 업계의견 청취	’25.1월
설명회	공시집단 소속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공시 의무와 관련하여 매뉴얼 개선 및 교육·설명	’25.5월
설명회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을 위한 업계 설명회 개최	’25.9월
상담회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분기별 순회상담 실시	’25.매분기
간담회	용역하도급 분야 업계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교육) 실시	25. 5월,11월

□ 기대효과

○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아 강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환경 조성

○ 중소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강화 및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함께 성장하는 ‘공정거래기반’ 확립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4	’25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 추진(Ⅱ-1-일반재정③)			
①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 추진(1331)	일반	33.1	32.2
·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 추진(400)		23.3	17.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2	’23	’24	’25			
납품단가 조정제도 등 하도급분야 제도개선 건수	8	9	10	10	최근 3년간 제도개선 실적 평균치 9건 대비 10% 상승한 10(9.9건)건을 설정	법령, 고시, 예규, 지침, 표준계약서 등 제·개정 건수	내부결재문서, 공문, 보도자료 등
하도급정책 관련 현장소통 건수	-	-	9	10	하도급정책의 현장안착 및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책 수혜자 및 유관단체 관련 현장소통 작년 실적치(9건) 대비 10% 상승한 10건(9.9건)을 설정	간담회, 설명회 및 홍보지 등 배포 건수	내부결재문서, 공문, 보도자료, 공정위 누리집 업로드 등
공정거래협약체결 기업수	412	431	478	490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한 점을 고려하여 전년도 실적(478건) 대비 3% 상향한 490건을 목표치로 설정	기업들로부터 신청 받은 협약체결 건수	협약체결문서 또는 공정거래협약 사이트 출력문서 등

2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등 하도급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Ⅲ-1-②)

□ 추진배경

○ 최근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악화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 경제 위험 요인 상존

* ▲ 기준금리(%) : ('18)1.75 ('19)1.25 ('20)0.5 ('21)1.0 ('22)3.25 ('23)3.5 ('24.12)3.0 (출처: 한국은행)
▲ 소비자물가상승률(%): ('18)1.5 ('19)0.4 ('20)0.5 ('21)2.5 ('22)5.1 ('23)3.6 ('24)2.3 (출처: 통계청)

○ 중소기업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상생협력문화를 조성할 필요

* 업체수 기준 99.9%, 종사자수 기준 81.0%(출처 : 중기중앙회, '24.8월)

- 아울러, '24년 수급사업자들이 인식하는 하도급 거래 상황 개선여부 및 정책 만족도가 다소 하락함으로써 이에 대한 개선 요구 존재

※ **('24년도 하도급 실태조사 결과)** 거래상황에 개선 응답비율: 63%('23년)→49%('24년), 하도급정책 만족 응답비율: 67%('23년)→56%('24년)

○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원자재 가격 급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지원 요구 증가

* 국정과제 세부과제(30-2)인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등 정당하게 제값받는 여건 조성"추진의 일환

○ 높은 정밀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근 지속 성장 중인 산업기계* 분야(반도체 장비, 농기계**)의 기술유용 행위 감시 필요성 증대

* 다양한 산업 분야에 생산활동 자동화를 제공하는 장비 (예: 공작기계.산업용 로봇)
** ▲(국내 반도체 장비 시장 전망) ('20)128억 2천만 달러→ ('25)196억 4천만 달러
▲(농기계 수출액) ('19)11.3억 달러→ ('22)17.4억 달러 & 농기계 제품군 다변화, 자율주행 농기계 개발.생산 등에 따라 기술유용 가능성 ↑

- 유관기관과 MOU 체결 등을 통해 구축한 소통채널*을 사건 발굴에 적극 활용할 예정

* ①공정위.중기부.특허청.경찰청 4자 MOU 체결('14.12월) ②공정위.경찰청 제보 채널 신설('23.2월) ③공정위.특허청 MOU 체결('23.10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첨단전략 산업, 콘텐츠,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집중 감시

- **(첨단전략 산업)** 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포착 및 발굴

- **(소프트웨어)** 급격한 성장중인 시스템통합(SI) 분야*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행위가 집중되는 사항**적발・제재 추진

* SI업종 매출액: ('19)22.7조원 → ('23)35.5조원 (약 56.5% 성장)
** 일방적 검사기준 설정, 검사비용 전가, 손해배상책임·하자담보책임 가중 등

- **(문화콘텐츠 분야)** 직권조사 실시를 통해 중・소규모 제작사 보호하여 혁신적인 콘텐츠의 생산 기반 조성

○ 납품단가 연동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25년도 실시되는 모든 직권조사에서 연동제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

- 또한, 제도 근간을 해치는 탈법행위(쪼개기계약, 미연동강요) 집중 감시

○ 반도체 장비・농기계 등 산업기계 분야 내 기술유용행위 중점 점검

- 특히, 기술유용 관련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여 분쟁 빈발 업종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여 적극적인 직권조사 추진

* 중기벤처기업부.특허청.경찰청 등

< '2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설 명절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및 결과 발표	2월
2/4분기	주요 하도급 사건 처리 결과 발표	4~6월
	컨텐츠 분야 법 위반행위 점검	4~5월
3/4분기	주요 주요 하도급 사건 처리 결과 발표	7~9월
	첨단전략 산업 분야 법 위반행위 점검	9월
	추석 명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및 결과 발표	9월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4/4분기	하도급 실태조사 관련 법 위반사업자 조치	10~12월
	주요 주요 하도급 사건 처리 결과 발표	10~12월
연중	법 위반행위 조사 및 시정조치	-
	납품단가 연동제 준수 여부 및 탈법행위 등 점검·시정조치	-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인해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의 원·수급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유관기관 대상 현장의견 수렴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한국광고영상제작사협회 등 컨텐츠제작업계 대상 간담회 실시	4월
간담회	연동제 시행 안착 관련 건설사 간담회 실시	6월
간담회	첨단전략산업분야 소부장 기업 간담회 실시	7월
관계부처 실무협의회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 등에 대한 사건발굴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기술분쟁 빈발 업종 등의 정보 파악	10월

□ 기대효과

○ 첨단전략산업·소프트웨어·문화콘텐츠 분야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으로 혁신성 있는 중소기업의 도약(scale-up)을 지원

○ 납품단가 연동제의 안정적 정착을 통한 납품단가 제값 받는 여건 조성

○ 중소기업 대상 기술 유용행위 근절로 동반성장 구조 구축 및 기술혁신 유인 보호를 통한 안정적인 경제성장 기반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4	'25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 추진(Ⅱ-1-일반재정③)			
①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 추진(1331)	일반	33.1	32.2
·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 추진(400)		23.3	17.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2	’23	’24	’25			
기술유용 분야 법위반 행위 사건처리건수 (조치유형별 가중치 조정)	12.75	10.25	10.3	11.4	최근 3년 등락 후 상승 추세에 따라 최근 3년 평균 실적의(11.1) 대비 3% 상향한 11.4건을 목표치로 설정	(하도급법 제12조의3 위반 사건처리점수) [(안건상정 건수)×1.0+경고 건수)×0.5 + (무혐의+과태료+심사절차 종료 건수)×0.25]	사건처리시스템, 보도자료, 공문 등
일반 하도급 분야 법위반행위 사건처리건수 (조치유형별 가중치 조정)	57.3	143.5	160.5	165.3	최근 3년간 실적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점을 고려하여 전년도 대비 3% 상향한 165.3점을 목표치로 설정	(일반 하도급 분야 처리 사건 점수) [(안건상정 건수)×1.0+경고 건수)×0.5 + (무혐의+과태료+심사절차 종료 건수)×0.25]	사건처리시스템, 보도자료, 공문 등

성과목표 III-2 유통 분야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고, 甲-乙간 공정한 거래기반을 마련한다.

(1) 주요 내용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생적 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을 도모**

○ 가맹점주와 밀접한 분야의 **법·제도를 정비**하고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가맹점주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

○ 유통분야의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 실태조사, 분쟁조정 분석 등을 통해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상시 감시**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2	'23	'24	'25			
가맹분야 고객만족도	55.6	50.4	56.7	55.2	최근 3개년 평균 실적(54.2)에 1%p를 상향한 55.2를 '25년 목표치로 설정 * 3개년 실적이 등락하는 점 고려	가맹점주 100명을 대상으로 11점 척도를 이용한 설문조사 (100점 만점으로 환산)	고객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용역기관 실시)
유통·대리점분야 고객만족도	70.4	70.3	67.3	69.3	최근 3개년 평균 실적(69.3)을 '25년 목표치로 설정 * 최근 3년 중 2년 연속 하락하는 점 고려	유통 및 대리점 분야 고객만족도의 평균값 (유통) 납품업자 100명을 대상으로 11점 척도를 이용한 설문조사 (100점 만점으로 환산) (대리점) 대리점분야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11점 척도에 의한 설문조사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고객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용역기관 실시)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소비심리 둔화**가 계속되어 가맹점주·납품업자·대리점주의 **영업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

→ 이에 유통분야에서 가맹본부, 유통업체, 공급업자는 경기불황에 따른 위험을 가맹점주 · 대리점주와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불공정행위 발생가능성이 상존**

□ 갈등요인

○ **중소상인들의 경영여건 악화, 갑질 문제 지속** 등으로 인해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해 달라는 사회적 요구 지속

○ 반면, 경기침체로 인한 가맹본부·공급업자·대형유통업체 등의 경영악화로 **제도개선 등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 가능성

□ 갈등관리계획

○ 제도 마련 및 개선 과정에서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정책·제도의 합리성 제고

○ 지자체 등 외부 기관과 **상시 소통**하면서 인력·예산 등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일관된 법집행을 위해 **협업체계를 구축·운영**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가맹분야 불공정거래관행 개선(Ⅲ-2-①) [민생]

□ 추진배경

○ 그간의 지속적 정책 추진에 따라 가맹분야 거래관행이 개선*되는 모습이나, 여전히 **일부 불공정한 행태**들 또한 **잔존**

* '24년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71.6%,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8.8%로 나타남

○ 또한,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가맹본부의 **부당한 비용전가** 등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가능성** 증가

○ 아울러, **자영업 경기침체**와 함께 **가맹점 폐업률도 증가**하는 등 가맹분야 **창업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

→ 제도개선, 상생협력 문화 확산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여 **가맹점주의 경영환경 개선** 및 **창업안정성 강화**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제도 개선 추진**

○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법 개정)

○ **(정보공개서 내용·체계 개편)** 제공되는 **정보의 내실화**, 정보공개서 **가독성 제고**를 위해 **정보공개서 내용·체계 개편 추진**(고시 개정)

※ 구체적인 정보공개서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정보공개서 개선 TF」를 구성·운영하여 관계자 의견을 면밀히 수렴

② 필수품목 제도개선 사항의 **시장 안착 도모**

○ 작년 가맹사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필수품목 제도 개선사항***의 **원활한 시장 안착을 유도**

* ▲필수품목의 종류와 그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으로 신설('24.1 법 개정),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 시 가맹점주와의 협의를 의무화('24.6, 시행령 개정)

- **(업종별 간담회 개최) 외식·도소매·서비스 업종**의 대표 가맹본부 및 점주를 대상으로 필수품목 **제도 성과점검**을 위한 **간담회** 개최

- **(현장 교육)** 가맹본부·점주 대상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실시하여 필수품목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인식도 제고**

③ **각종 탈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 **직영점 의무 운영 제도를 확대***하여 직영점 운영 경험이 없는 사업자가 기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양도받아 업종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직영점 운영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법 개정)**

* 現) 가맹사업을 신규로 개시(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직영점 운영의무 부과

→ 改) 가맹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 업종의 직영점 운영을 의무화

○ 정보공개서 등록 후 일정 기간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정보공개서**가 각종 **탈법행위에 악용**되는 **사례를 차단 (법 개정)**

○ 숙고기간 단축제를 개편*하여 **가맹본부 소속 가맹거래사·변호사**를 활용하여 가맹사업법상 **숙고기간을 단축**시키는 **편법 사례 차단**(법 개정)

* 現)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 소속 가맹거래사·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경우에도 가맹사업법상 숙고기간 단축(14일→7일)

→ 改) 가맹희망자가 중립성·객관성이 보장되지 않는 가맹본부 소속 가맹거래사·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는 경우 숙고기간이 단축되지 않도록 함

④ **가맹거래사**의 **역할·책임 강화** 등 **가맹거래사 관련 제도 정비**

ㅇ 가맹분야 전문 자격사인 **가맹거래사의 역할·책임**을 **강화***하여 **전문 자격사**를 통한 **가맹본부의 법·제도 준수**를 **유도** (법 개정)

* (예)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공시 대행(또는 대리)권을 부여하는 방안, 업무상 고의·과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시하는 방안 등

ㅇ 가맹거래사 갱신등록, 자격증·등록증 재발급 시 **가맹거래사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에 **범죄경력조회 요청 근거** 규정을 **마련** (법 개정)

⑤ **협약평가 기준 정비**를 통한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문화 확산

ㅇ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에 **새로운 평가항목**을 도입하는 등 **협약평가 기준을 재정비하여** 평가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실질적인 상생협력 이행 유도

ㅇ 가맹분야 공정거래 협약 관련 업체 대상 **설명회 개최**, 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 등 **홍보 강화** 및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업체들의 **협약 참여를 독려**

⑥ 가맹점주에 대한 **피해구제 기능** 강화

ㅇ 공정거래법, 하도급법에 기도입된 **자료제출의무제도***를 **가맹사업법에 확대 도입** 추진(법 개정)

* 공정거래법 '21.12월 시행, 하도급법 '22.2월 시행

- 현행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만으로는 입증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존재해 **피해업체가 증거를 보다 용이하게 확보하고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

⑦ 가맹분야 **불공정관행의 효과적 예방·개선**을 위해 주요업종에 대해 업종현황, 거래관행 등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실시

- **설문 문항의 수 및 내용 재편**, 가맹점주 인식개선을 위해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등을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안내** 작업 등을 통해 **응답률*** **제고**

* 최근 5년간('20~'24) 평균 응답률 30.14% 및 평균 응답표본 3,616건

< '2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개선 TF 회의	1월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 개최	2월
	일본 변호사협회 간담회	2월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개선 TF 회의	2월
	지자체 분쟁조정 ·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 성과공유 간담회	3월
	필수품목 제도 성과 점검을 위한 간담회 개최(외식업)	3월
	직영점 운영의무 제도 확대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3월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사유 신설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3월
2/4분기	'25년도 가맹산업 현황 발표	4월
	필수품목 제도 성과 점검을 위한 간담회 개최(도소매업)	4월
	필수품목 제도 성과 점검을 위한 간담회 개최(서비스업)	5월
	필수품목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현장 교육 실시	6월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6월
	가맹거래사의 역할·책임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6월
	숙고기간 단축제도 개편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6월
	가맹거래사 범죄경력 조회 근거 마련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6월
3/4분기	'25년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실시	7월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	7월
	필수품목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현장 교육 실시	8월
	지자체 분쟁조정 ·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 성과공유 간담회	9월
	필수품목 우수사례 발표회, 사례집 배포	9월
4/4분기	필수품목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현장 교육 실시	10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개정	11월
	가맹분야 공정거래 협약평가 모범사례 발표	12월
	'24년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12월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	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분쟁조정,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 등 권한 이양 업무 관련 유관기관(조정원, 지자체)와의 정기적인 **실무간담회** 실시

○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 단체, 가맹점주 단체** 등 정책이해관계자들과 직접 소통하여 **정책 홍보 및 수요 발굴**

○ 아울러,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현장교육** 등을 실시하여 **제도의 시장 안착을 도모**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개선 TF 회의	’25.1월
설명회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	’25.2월
간담회	일본 변호사협회와의 간담회	’25.2월
간담회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개선 TF 회의	’25.2월
간담회	지자체 분쟁조정·정보공개서 등록 업무 상반기 성과공유 간담회	’25.3월
간담회	필수품목 제도 성과 점검을 위한 간담회 개최(외식업)	’25.3월
간담회	필수품목 제도 성과 점검을 위한 간담회 개최(도소매업)	’25.4월
간담회	필수품목 제도 성과 점검을 위한 간담회 개최(서비스업)	’25.5월
현장교육	필수품목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현장 교육 실시	’25.6월
현장교육	필수품목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현장 교육 실시	’25.8월
간담회	지자체 분쟁조정·정보공개서 등록 업무 하반기 성과공유 간담회	‘25.9월
간담회	필수품목 우수사례 발표회	’25.9월
현장교육	필수품목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현장 교육 실시	’25.10월

□ 기대효과

○ 가맹분야에 **공정거래질서 및 상생협력 문화 정착**

○ 수익악화에 직면하고 있는 **영세 가맹점주들의 실질적 경영 여건 개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 원)

	회계구분	'24	'25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 추진(Ⅱ-1-일반재정③)			
①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 추진(1331)	일반	33.13	32.19
·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401)		5.45(가맹)	9.89(가맹)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2	'23	'24	'25			
가맹분야 제도개선 건수	6	9	9	8	제도 개선 실적이 등락하는 점을 고려하여 최근 3년 평균 실적(8.0)치를 목표치로 설정 * 법률의 경우 국회 제출(발의) 건수	법령, 고시, 예규, 지침, 표준계약서 등 제·개정 건수	내부결재문서, 공문, 보도자료 등
제도의 현장 안착 촉진 활동	(신규지표)			12	과 업무 성과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한 성과지표로, 작년도 '유관기관 및 정책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활동' 목표치와 동일하게 설정 * 제도개선을 위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은 제외하고, 제도개선 완료 후 실시하는 현장안착 촉진활동만 실적에 포함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목표 설정에 해당	정책수요자 대상 제도 성과 점검, 제도 홍보·교육 건수	내부결재문서, 공문, 보도자료 등

2 유통·대리점분야 거래관행 개선 (Ⅲ-2-②) [민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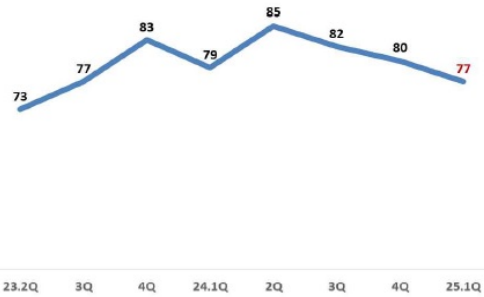
□ 추진배경

○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누적된 고물가에 따른 소비위축 등으로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모두 **경영여건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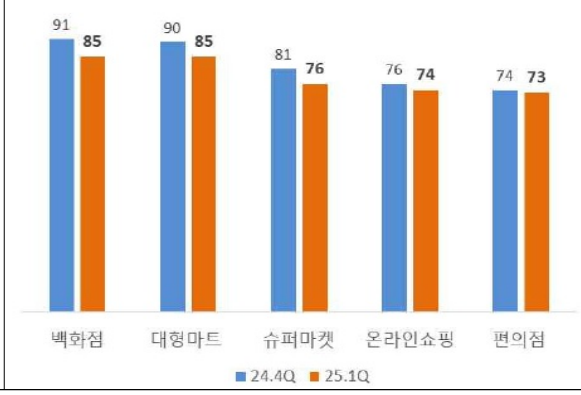
○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가 최근 3분기 연속 하락(82→80→77)하는 등 앞으로의 **전망**도 **어두운 상황**

* Retail Business Survey Index : 소매유통업체의 현장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100 이상이면 전분기 대비 호전 예상기업이 많고, 100 이하면 그 반대임을 의미

<그림1>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추이



<그림2> 소매업태별 전망치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25.1.15)

○ **어려운 경제여건** 아래 납품업자·대리점 등 중소상공인 대상 **대금지급지연**, 각종 **부담 전가** 등 불공정행위 **발생 가능성 증가**

→ 중소상공인들의 **취약한 지위**를 **보완**하고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개선, 상생문화 확산 등 **다양한 정책수단 활용**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유통분야 **납품대금**의 **적시 지급** 유도 및 **정산과정**의 **투명성** 강화

○ 대규모유통업자 **대금지급 실태조사**를 통해 주요 유통 업태별·거래유형별 **대금지급 현황**과 **정산절차**를 분석·공개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행 정산기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정산기한 단축** 등 제도개선 추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 (직매입거래)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특약매입·위수탁거래 등)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 **대금정산 시** 납품업자가 판매장려금 등 공제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제내역 사전통지** 사항 구체화 (직매입표준계약서* 개정)

* 작년 편의점 표준계약서 개정에 이어 백화점·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등에 확대

② 대리점법상 **대리점 단체구성권 명문화** 및 **계약해지절차** 도입

○ 공급업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대리점들의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을 명문화(대리점법 개정)

* 사업자단체 구성·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제공 금지 규정 포함

○ 공급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로부터 대리점을 보호하고 **안정적 영업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계약해지 절차***를 강화

* 중도해지 시 해지사유를 시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 설정, 2회 이상 서면 통지 의무화

③ 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 사후 규율 체계** 개선

○ **공정거래법과의 정합성* 및 법 위반 억지력 제고**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상 불공정행위의 **정액과징금 상한을 2배 상향**(5억→10억)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 공정거래법은 '21년 전부개정시 정액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였음

○ 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령상 **위반금액 정의**가 **부재**한 법 위반행위에 대한 **대체적* 부과 기준** 마련

* 현행 규정상 '위반금액'이 정의되지 아니한 법위반행위(경영간섭 등)에 대해서는 정액과징금(최대5억원)만 부과 가능 → 정률과징금 등 부과 가능성 검토

○ 유통분야에서 빈발하는 판촉행사 관련 법 위반 예방 및 피해 구제를 위해 **판촉비 부당 전가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 현행법은 4개 유형(제7조 부당감액, 제10조 부당반품, 제12조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사용, 제18조 보복행위)의 법위반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3배소) 도입('19.4월)

○ 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 피해업체의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개정)

* 손해입증·손해액 산정에 필요시 법원이 당사자나 공정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공정거래법, 하도급법은 당사자에 대한 자료제출명령제 기 도입)

④ **거래실태 정보제공**을 통한 시장감시에 따른 **자율 개선 유도**

○ 주요 유통분야* 대형유통업체별로 **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율 등 **부담 현황**을 **공개**하여 납품업체 부담 완화 유도(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 올해는 작년까지 조사하였던 6개 업태에 더하여 면세점·전문판매점 업태를 추가

○ 대형유통업체들의 **정보제공수수료*** 수취 실태 및 이와 관련한 정보이용 서비스 강요 등 **불공정거래 관행** 여부를 파악·공개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유통분야 납품업자 실태조사)

* 납품받은 상품의 판매에 관한 데이터나 소비자 동향·다른 납품업체의 동향 등 정보를 제공하고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정보 이용의 대가로 수취하는 요금

○ 엔데믹 이후 국민들의 수요가 급증한 **스포츠·레저 분야**를 추가하여 **21개 업종**에 대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공개

⑤ 자율준수 지원을 위한 **모범거래기준** 및 **법 준수 지침** 마련

○ 최근 성장 추세를 보이는 **여행업종**에 대하여 작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대리점거래 표준계약서 제정**

* 여행업종은 코로나19에 따른 업계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그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실태조사에 포함

○ 신상품 입점장려금에 관한 수범자들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판매장려금 심사지침** 상 **신상품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명확화

* 현재 '출시' 후 6개월 이내의 상품을 원칙으로 한다고만 규정하여, '출시'의 기준을 국내시장·특정유통시장·특정사업자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 가능

⑥ **공정거래협약제도** 운영 · 개선을 통한 유통 · 대리점분야 **상생협력 강화**

○ 협약이행평가 결과가 기업들의 개선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흡 등급**을 받은 업체에 **협약평가의견서 제공** (유통분야 공정거래협약 절차기준 개정)

* 작년 대리점 분야 협약이행평가에 도입된 제도를 유통분야 협약이행평가로 확대

○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CP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기업에게 **대리점 협약이행평가 가점** 부여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절차기준 개정)

○ 유통·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설명회, **모범사례 발표회**,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 등을 통해 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 확산 도모

* 대리점과 장기계약 체결, 비용분담·금융지원 등 상생 우수기업을 동행기업으로 선정

⑦ **중소상공인**과의 **소통** 및 유통 · 대리점정책 **교육 · 홍보**

○ **유통 옴부즈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제도개선 요청사항**과 불공정행위 실태 등 **업계 애로사항 의견청취**

* 업태별 거래 현장의 불공정행위 제보 및 납품업자 애로사항, 법 제도 관련 개선사항 제언 역할 수행 ('13.3월부터 운영)

○ 대규모유통업체 및 공급업자에 대한 **법준수 교육**과 납품업체 및 대리점에 대한 **법 위반 예방 교육**을 상시적으로 실시

< '2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대리점) 대리점분야 협약평가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1월
	(유통) 유통분야 협약평가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1월
	(유통) 대규모유통업자 대상 대금지급기한 실태조사 실시	3~4월
	(유통) 상반기 유통 옴부즈만 회의 개최	3월
	(대리점) 대리점법 개정방안 의견수렴 (공급업자)	3월
	(대리점) 대리점법 개정방안 의견수렴 (대리점사업자)	3월
2/4분기	(유통·대리점) 과징금 부과체계 정합성·합리성 증진을 위한 연구 용역 실시	5월
	(대리점)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제정 관련 간담회	6월
	(대리점) 직매입분야 표준유통계약서 개정 관련 간담회	6월
	(유통) 대규모유통업자 대상 대금지급기한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안 발표	6월
	(유통) 판매장려금 부당성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	6월
3/4분기	(유통) 대금정산기한 개선방안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	7월
	(대리점) 대리점분야 협약평가 결과 발표	7월
	(대리점)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협약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개정	8월
	(유통) 유통분야 협약평가 결과 발표	8월
	(유통) 유통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 개정	9월
	(대리점)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제정	9월
	(대리점) 대리점법 개정안 발의	9월
4/4분기	(유통) 하반기 유통 옴부즈만 회의 개최	10월
	(유통) 2025년 납품업체 대상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11월
	(유통) 2025년 대형유통업체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11월
	(대리점) 2025년 대리점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11월
	(대리점) 2025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및 모범사례 발표	12월
	(유통) 유통분야 공정거래 협약평가 모범사례 발표	12월
	(유통)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12월
	(유통) 대금정산기한 개선을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발의	12월
연중	대리점법·대규모유통업법 규정에 대한 교육·홍보	상시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주요 제도개선** 사항*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

*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정산기한 개선, 대리점법상 단체구성권·계약해지절차 도입, 여행업종 표준계약서 제정, 대금공제사항 사전통지 명확화를 위한 직매입 표준계약서 개정 등

○ 유통·대리점 분야 **협약평가 설명회**를 통해 대규모유통업자와 공급업자의 활발한 **공정거래 협약 참여** 및 **상생문화 확산** 유도

○ 유통 옴부즈만 회의, 한국유통법학회-유통업계 간담회 등 정기 개최를 통해 최근 유통이슈에 대한 **납품업자·전문가·유통업자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

구 분	내용	세부일정
설명회	대리점분야 협약평가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25.1월
설명회	유통분야 협약평가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25.1월
간담회	상반기 유통 옴부즈만 회의 개최	’25.3월
간담회	대리점법 개정방안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공급업자)	’25.3월
간담회	대리점법 개정방안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대리점사업자)	’25.3월
간담회	한국유통법학회-유통업계 합동 간담회	’25.3월
간담회	여행업종 표준대리점 계약서에 대한 의견 수렴	’25.6월
간담회	직매입 표준계약서 개정 관련 유통업계 의견 수렴	’25.6월
간담회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정산기한 개선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	’25.7월
간담회	한국유통법학회-유통업계 합동 간담회	’25.9월
간담회	하반기 유통 옴부즈만 회의 개최	’25.10월
설명회	‘26년도 대리점분야 협약평가 기업 모집을 위한 설명회 개최	’25.11월

□ 기대효과

○ 유통·대리점 분야의 제도 개선 및 거래관행 개선을 통해 중소상공인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공정경쟁 기반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 원)

	회계구분	'24	'25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 추진(Ⅱ-1-일반재정③)			
①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 추진(1331)	일반	33.13	32.19
·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401)		9.87(유통)	15.01(유통)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2	'23	'24	'25			
유통·대리점 분야 제도개선 건수	10	10	10	10	○ 최근 3개년 평균 실적(10건)을 '25년 목표치로 설정 *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개정 등 다수의 입법과제가 포함되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목표 설정 (발의건수 포함)	법령, 고시, 예규, 지침, 표준거래계약서, 가이드라인 등 제·개정 건수	내부결재문서, 공문, 보도자료 등
유통·대리점 정책 관련 분야 현장소통 건수(신규)	-	-	-	10	○ 유통·대리점 정책의 현장안착 및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책 대상, 수혜자, 전문가 및 유관 단체 관련 현장소통 실적 목표를 신규 설정 * 유사 지표인 하도급정책 현장소통 건수를 참고하여 해당 지표의 전년도 실적(9건) 대비 10% 상향한 10건을 목표치로 설정	간담회, 설명회 및 홍보지 등 배포 건수	내부결재문서, 공문, 보도자료, 공정위 누리집 업로드 등
유통·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체결 기업 수(신규)	-	-	-	38	○ 유통·대리점분야 상생협력 문화 확산 노력의 결과치로서 공정거래협약 체결 기업 수를 신규 설정 * 최근 3년간 하락 후 상승('22년 36건, '23년 35건, '24년 40건)한 점을 감안, 최근 3년 평균 실적(37건)대비 3% 상향한 38건을 목표치로 설정	기업들로부터 신청받은 협약 체결 건수	협약체결문서 또는 공정거래협약 사이트 출력문서 등

3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시정(Ⅲ-2-③)

□ 추진배경

○ **경기침체**로 인해 **경영상황이 악화**된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 유통업자-납품업자,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행위** 증가 및 갈등 고조 가능성

- 우리나라 **대표 소상공인**인 **가맹·유통·대리점**들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도모**할 필요

○ **(가맹)** 가맹점의 배달앱 의존도가 높아진 환경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배달앱 이용 관련 비용 부담을 높이는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 필요

* 배달앱 내 가맹점 주 배달비 부담을 강제, 리뷰 이벤트 참여 강요 등

-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판매하는 필수품목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적시하고 불리하게 변경 시 협의하도록 한 제도개선*이 실제 거래관계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점검 필요

* (계약서 필수기재) 필수품목 항목·공급가격 산정방식 등을 가맹계약서 내 기재 의무화 (신규·갱신계약 ⇒ '24.7.3. 시행, 기존계약서 ⇒ '25.1.2.까지 반영)
(필수품목 협의제)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와의 협의 의무 ('24.12.5. 시행)

○ **(유통·대리점)** 다수의 중소상공인·자영업자가 **소수의 대규모유통업체·공급업자와 거래**하는 유통·대리점 분야 거래구조*상 **대규모유통업체 및 공급업자의 불공정한 거래행태가 빈번**

* (유통) 약 27만개 납품업체가 100여개 대형유통업체(백화점·대형마트·아울렛·TV홈쇼핑 등)와 거래
(대리점) 약 20만개 대리점이 500여개 공급업자(제조업체, 수입업체 등)와 거래

- 특히 **온라인유통**에서 심화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및 **민생업종**에서 **공통적**으로 법 위반이 지속 발생하는 **불공정관행 집중 감시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가맹)** 가맹점주 **경영여건 악화**를 초래하는 **거래관행을 집중 감시**하고, **필수품목 갑질 근절**을 위해 旣도입한 제도의 **현장안착 실태점검**

- 배달앱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달·이벤트 비용 떠넘기기 등 불공정행위 점검·시정

- 가맹점의 가맹본부에 대한 대금결제 방식(현금/카드)에 관한 가맹본부 및 가맹점주 선호 등 의견수렴을 위해 간담회·의견수렴 창구 운영

- 피자・햄버거・치킨 등 15개 외식업종(75개 업체) 중심으로 계약서에 필수품목 관련 사항을 기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서면실태조사 실시

○ **(유통・대리점)** 급성장한 **온라인쇼핑** 업계* 및 대리점 **국민생활 밀접업종**(유제품, 타이어, 자동차판매, 통신) 대상 **불공정관행 점검**

* **대금 지연지급, 판촉비용 전가, 불이익제공행위** 등

< 국민생활 밀접업종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 >

❶ 매장관리 판매원의 인건비 전가(유제품)
❷ 대리점의 경영정보 요구 및 거래처 제한(타이어)
❸ 대리점의 귀책사유 없이 페널티 부과 및 기변수수료 미지급(통신)
❹ 대리점의 인력채용 및 영업활동 제한(자동차판매)

- **서면실태조사 결과, 간담회** 및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유통대리점 분야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시정**

○ **(현장의견) 이해관계자(가맹점주, 가맹본부, 대리점협회 등)** 등과 **간담회**를 통해 업계 애로사항 파악 및 불공정 거래관행의 자율적 개선 유도

< '2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가맹) 가맹 분야 불공정행위 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4월
2/4분기	(대리점) 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 점검계획 수립	5월
	(대리점) 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 점검 실시	6월
3/4분기	(가맹) 가맹 분야 불공정행위 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9월
	(유통대리점) 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 점검계획 수립	9월
4/4분기	(유통대리점) 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 점검 실시	10월
연중	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 감시·시정조치	상시
분기	익명제보 내용 결과 분석 보고	분기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불공정행위로 인해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민생 밀접 업종의 이해관계자(가맹점주·가맹본부, 납품업체, 대리점단체 등) 대상 현장의견 수렴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가맹) 가맹본부 간담회 개최	'25.3월
회의	(유통) 상반기 유통 옴부즈만 회의	'25.5월
간담회	(대리점) 대리점협의회 간담회 개최	'25.4월
회의	(유통) 하반기 유통 옴부즈만 회의	'25.11월
간담회	(가맹) 가맹점주 간담회 개최	'25.12월
간담회	(유통) 납품업체 등 이해관계자 업계 간담회 개최	'25.12월

□ 기대효과

○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불공정행위 감시・시정, 거래관행 개선 등을 통해 다수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권익확보** 및 **공정경쟁 기반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 원)

	회계구분	'24	'25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 추진(Ⅱ-1-일반재정③)			
①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 추진(1331)	일반	24.66	33.13
·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401)		9.87	9.8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2	'23	'24	'25			
가맹 분야 사건처리 건수 (조치유형별 가중치 조정)	14.5	11.75	13.75	13.73	최근 3개년 평균 실적(13.33)에 3%를 상향한 13.73건을 '25년 목표치로 설정 * 3개년 실적이 등락하는 점 고려	[(안건상정 건수)×1.0+경고 건수)×0.5 + (무혐의+심사절차종료 건수)×0.25]* *과태료 부과 건 제외, 외생변수인 서울시·경기도 조사의뢰 건 제외(자체 성과역량보다는 특정 지자체의 다수의 의뢰건수에 사건 처리 실적이 좌우되는 불합리 제거)	의결서, 보도자료 등 (경고, 무혐의, 상정 후 미심의 건의 경우 사건처리시스템 자료)
유통·대리점분야 사건처리 건수 (조치유형별 가중치 조정)	15.6	11.9	13.6	13.7	최근 3개년 평균 실적(13.7)을 '25년 목표치로 설정 * 3개년 실적이 등락하는 점 고려	[(안건상정 건수)×1.0+경고 건수)×0.5 + (무혐의 건수)×0.1]* *대리점의 경우 과태료 부과 건 제외	안건상정 문서, 의결서, 보도자료 등 (경고 무혐의 건은 사건처리시스템 자료)

전략목표 Ⅳ	소비자 안전환경을 조성한다.

기 본 방 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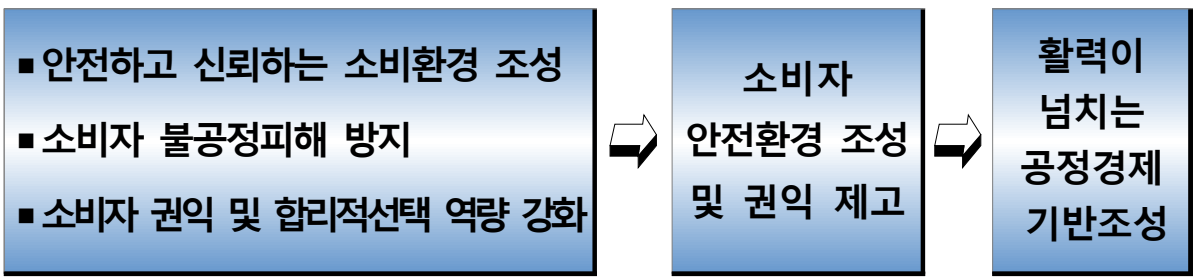
◇ 시장 변화를 주도하는 **소비자 주권자**로서의 지위를 강화함과 동시에 **적극적 법집행**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고,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자 안전 환경을 조성**

◇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및 **법집행 강화**

- o **신기술·신유형 등 최근 급성장하는 시장**에서의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 모색** 및 **제도개선**을 **추진**
- o **온라인 시장**에서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적극 점검·시정**
- o **국민생활 밀접** 분야, **소비자피해 발생** 분야 등 **불공정약관 시정** 및 **표준약관 보급**을 통해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 o **다단계·방문판매·상조** 분야의 **위법행위를 적극 시정**하고, **교육·홍보·정보제공 강화** 등 소비자피해 방지 대책을 추진

◇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자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역량 강화** 및 **소비자권익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 o **위해정보 수집기관을 확대**하여 촘촘한 안전 감시망을 구성하고,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위해제품을 차단**하여 소비자 안전 환경 조성
- o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역량 강화**를 위한 **소비자 교육을 내실화**하고,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를 하도록 **소비자중심경영 문화를 확산**
- o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는 **제도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소비자정책 **국제협력 기반을 강화**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2	2	6	12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Ⅳ. 소비자 안전환경을 조성한다.		소비자상담 접수 건수 대비 피해해결 조치 건수 비율
1. 소비자 기만행위 등 불공정피해를 방지한다.		피해 빈발분야 소비자 보호에 대한 전문가 평가
	① 전자상거래·약관 분야 소비자피해 방지	소비자거래정책 분야 제도개선
		유관기관과의 협력활동
	② 전자상거래 분야 법위반행위 시정	전자상거래 분야 사건 처리건수
	③ 다단계·방문판매·할부거래 분야 소비자피해 방지	특수거래 및 할부거래 분야 정보제공·교육·홍보 건수
		특수거래 및 할부거래 분야 제도개선 건수
	④ 다단계·방문판매·할부거래 및 약관 분야 법위반행위 시정	특수·할부거래 분야 사건처리 건수
		불공정약관 시정을 위한 직권조사 수
2. 소비자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한다.		소비자 권익제고 여건 조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
	①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	위해제품 차단 건수
		소비자 안전정보 제공 건수
		위해정보 제출기관 신규 지정 건수
	② 소비자권익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노력
		소비자정책분야 정보 제공·홍보 건수

전략목표 Ⅳ 소비자 안전환경을 조성한다.

(1) 주요내용

□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및 **법집행 강화**

- ㅇ 신유형 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ㅇ 표준약관 개정, 표준약관 사용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으로 불공정 약관의 통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통제 강화
- ㅇ 특수거래 및 할부거래 분야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하고, 관련 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예방

□ **안전한 소비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역량 강화** 및 **소비자 지향적 제도적 기반 확충**

- ㅇ 급변하는 소비환경에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감시망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가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및 교육 확대
- ㅇ 소비자권익을 제고하는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기업이 소비자 지향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도록 자율적 유도 및 확산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9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성과측정 시 유의사항)
	'20	'21	'22	'23	'24	'29			
소비자상담 접수 건수 대비 피해해결 조치 건수 비율	34.4	36.0	39.2	39.1	39.3	39.6	최근 3년 평균 실적치 37.6%에서 1%씩 상향하여 목표치 설정 * 37.6%(최근 3년 평균) → 38.0('25년) → 38.4('26년) → 38.8('27년) → 39.2('28년) → 39.6('29년)	상담센터의 상담접수 건수 대비 피해해결조치 건수의 비율 = (소비자단체, 지방소비생활센터의 피해해결조치건수의 합) / (소비자단체, 지방소비생활센터의 상담접수 건수[1]의 합) × 100	소비자상담센터 시스템에 입력된 상담 건수 및 피해처리 건수

1) 전체 상담 건수에서 "사업자상담실 안내, 타기관알선/이관, 기타정보 제공, 비소비자 상담처리, 반려, 재상담처리, 불만처리 등" 제외(피해 해결과 관련 없는 상담을 제외)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제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신기술·신유형 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소비자 문제해결에 대한 수요 증가

○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면서 위해제품 유통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주는 소비자 안전 문제가 지속 발생

○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고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부당 표시·광고, 불공정 약관 등 사업자들의 부당행위가 증가

○ 소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상조업(할부거래), 다단계(방문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피해 지속

○ 비대칭 정보 등으로 인해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소비자의 협상력 및 대응력에 한계 존재

□ 갈등요인

○ 손쉬운 방법으로 소비자 선택을 받기 위해 기업들의 부당 광고, 불공정 약관 등 각종 기만·부당행위 유인이 증가할 가능성

○ 위해 제품이나 위법한 방법으로 신기술·신유형 거래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유인도 상존

□ 갈등관리 계획

○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각종 위법행위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대응

○ 위해정보 제출기관 확대 및 위해제품유통 차단, 소비자정보 제공 등으로 합리적 소비선택을 지원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

성과목표 Ⅳ-1 소비자 기만행위 등 불공정피해를 방지한다.

(1) 주요 내용

□ **온라인 중심의 거래환경 변화에 맞게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및 사업자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ㅇ 제재규정 개편을 통한 법위반 억지력 확보, 이용후기 관리 투명성 강화 및 개인정보 수집범위 조정 등 관련 제도 정비
- ㅇ 다크패턴 규제의 시장 안착을 위한 소통 강화 및 자율규약 마련 유도, 구독서비스 관련 합리적 환불 기준 정립 등 추진

□ **온라인 시장에서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점검·시정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

- ㅇ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신규 온라인 플랫폼 등에 대한 점검 및 제재를 강화하여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 확산 차단
- ㅇ SNS마켓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를 통해 법 위반행위 적발 및 시정

□ **표준약관 제·개정 및 표준약관 관련 교육·홍보 등을 통해 불공정약관의 사용을 예방하고 사업자의 자율준수 유도**

- ㅇ 여행, 헬스장, 결혼준비대행업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표준약관 제·개정으로 거래기준 제시 및 소비자권익 제고
- ㅇ 표준약관 사용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활동 추진

□ **특수거래 및 할부거래 분야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하고, 관련 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예방**

- ㅇ 소비자 피해가 반복적 발생하는 상조·다단계·방문판매업체를 집중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

○ 다단계판매업자, 후원방문판매업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하고, 불법 피라미드 피해예방 교육 등 추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2	'23	'24	'25			
피해 빈발분야 소비자 보호에 대한 전문가 평가	75.7	79.2	84.3	80.5	최근 3개년 평균실적 79.7에서 1% 상향하여 목표치 설정	11점 척도에 의한 설문조사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용역기관 실시)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4차 산업기술의 융합, 온라인 마케팅 기법의 고도화로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기만행위들이 등장

○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고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불공정 약관 등 사업자들의 부당행위가 증가

□ 갈등요인

○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 등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들의 영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 제기 가능

□ 갈등 관리 계획

○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을 설득하고, 예측가능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 대상 교육, 홍보 등 병행 추진

○ 관련 부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속적인 협력·교류 증진 등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전자상거래·약관 분야 소비자피해 방지(Ⅳ-1-①) [민생]

□ 추진배경

○ 온라인 중심의 거래환경에 맞게 소비자 피해 예방, 분쟁 해결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전자상거래 관련 제도개선·보완 필요

○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상품이 증가하고 그 품목도 다양해짐에 따라 구매에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좀 더 충실히 전달하도록 보완 필요

○ 표준약관 제·개정 및 표준약관 관련 교육·홍보 등을 통해 불공정약관의 사용을 예방하고 사업자의 자율준수 유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전자상거래 분야>

○ 사업자 규모 및 플랫폼 거래비중 증가 등 변화된 시장 내 법 위반 억지력 확보를 위해 **전자상거래법 제재규정 개편** 추진

* 과태료 수준 상향, 플랫폼 입점업체 정보제공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신설, 영업정지 대상에서 경미한 법 위반행위 제외 등

○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력이 큰 **이용후기** 관련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관리 투명성 강화**

* 이용후기 게시기간, 삭제기준 등 정보공개 의무화

○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C2C **플랫폼**의 정보 수집범위 조정 및 분쟁해결 역할 확대

○ **해외 플랫폼**도 소비자 불만 및 분쟁해결 의무를 이행하도록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 새로운 온라인 **다크패턴** 규율*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주요 질의를 담은 **문답서 배포**

* 숨은갱신, 순차공개가격책정 등 6개 유형을 규율하는 내용의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25.2월)

○ 다크패턴 규제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업계 스스로 **자율규약 마련을 유도**하고 신속한 심사를 통해 자율규제 지원

○ OTT·배달앱 등 **구독경제** 관련 소비자 **중도해지권**을 보장하면서 **합리적 환불**이 이뤄지도록 **중도해지 환불기준 가이드라인** 마련(제정)

○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한 전자상거래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하여 상품정보제공 대상품목 정비, 정보제공 항목보완 등 **「상품정보제공 고시」 개정** 추진

* '23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개정 추진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분야>

○ **여행, 헬스장, 결혼준비대행업**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표준약관 개정**으로 거래 기준 제시 및 소비자권익 제고

○ 자영업자 대상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표준약관(온라인 광고대행 표준약관) **제정**

○ 외식업, 이사화물취급업 등에서 업계 현실을 반영하여 위약금 기준 현실화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추진

○ 약관법·표준약관 이해도 제고 등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하고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대상의 **교육 및 홍보** 추진

< '2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다크패턴 관련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2월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관련 문답서 배포	2월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 제정	3월	
2/4분기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5월	
	체력단련장(헬스장) 표준약관 개정	6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외식업 관련)	6월	
3/4분기	다크패턴 관련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 심사·승인	7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8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9월	
	「상품 정보제공 고시」개정	9월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 준수사항 홍보책자 개정 및 배포	9월	
4/4분기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 홍보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 교육	11월	
	온라인 광고대행 표준약관 제정	12월	
	국외여행 표준약관 개정	12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외식업 이외 업종 관련)	12월	
	구독서비스 중도해지 환불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12월	
상시	약관법·표준약관 관련 사업자 교육	-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법 개정과 표준약관·소비자분쟁해결 개정을 위한 사업자 간담회 등 개최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체력단련장(헬스장) 표준약관 개정을 위한 협회와의 회의	'25.2월
간담회	다크패턴 문답서 사업자 간담회	'25.2월
의견수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 제정 관련 약심위 의견수렴	'25.2월
의견수렴	타워크레인 임대차 표준계약서 제정 관련 약심위 의견수렴	'25.3월
의견수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을 위한 업계 의견수렴(환불기준 상향 관련)	'25.3월
간담회	외식업(노쇼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을 위한 소비자단체 간담회	'25.4월
의견수렴	외식업(노쇼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을 위한 업계 의견수렴	'25.4월
간담회	(외식업 이외 업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관련 이해관계자 간담회	'25.5월
의견수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25.5월

구 분	내용	세부일정
의견수렴	상품정보제공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25.6월
의견수렴	구독서비스 중도해지 환불기준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25.7월
의견수렴	(외식업 이외 업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25.9월
간담회	온라인 광고대행 표준약관 제정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담회	'25.10월
간담회	구독서비스 중도해지 환불기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간담회	'25.10월

□ 기대효과

○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 방지, 소비자피해 예방 및 방지 등에 있어 각종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여 소비자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

○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 표준약관 등 교육·홍보 활동을 통해 소비자 보호 역량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2	'23	'24	'25			
소비자거래정책 분야 제도개선	8	9	9	10	최근 3개년 평균 실적(8.6건)보다 16% 상향한 10건을 '25년 목표치로 설정	법령, 고시, 예규, 지침, 가이드라인 등 제·개정 및 운영시스템 개선 건수, 표준약관 제·개정을 위한 안건상정 건수	공문, 보도자료, 내부결재문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활동	31	34	34	35	최근 3개년 평균 실적(33회)보다 6% 상향한 35회를 '24년 목표치로 설정	국회, 지자체,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세미나, 포럼, 간담회, 교육, 홍보 등 협력 활동 횟수	공문, 보도자료, 내부결재문서 등

2 전자상거래 분야 법위반행위 시정(Ⅳ-1-②)

□ 추진배경

○ 전자상거래 업체의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바, 이를 점검 및 시정할 필요

* '25.2.14. 개정 전상법 시행에 따라 규율 대상 다크패턴 행위가 7개에서 13개로 확대(정기결제 유료 전환 시 소비자 고지·동의 의무화, 인터페이스 운영 시 금지사항 추가)

○ 다수 언론에서 보도된 의류 통신판매업자*들의 패딩 충전재 혼용률 허위 표시·광고 기사 내용에 대하여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점검 및 시정

* 의류 통신판매중개업체인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입점계약을 맺고 제품을 판매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e-커머스 플랫폼, OTT·음원 구독서비스, 여행 플랫폼 등에서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다크패턴 행위를 점검 및 시정

* (예)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구독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거나 대금을 증액하는 행위, 유류할증료·설치비 등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제외한 가격을 소비자 가격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 점검·시정

○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인 의류 통신판매업체들의 패딩 충전재 혼용률* 표시 등이 전상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점검 및 시정

- 충전재 함량 표시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시험성적서 등의 객관적 근거 유무 및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조사

* 패딩의 '다운' 표기 기준 : 솜털 함량이 75%(솜털:깃털=75:25) 이상을 충족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부속서1)

< '2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의류 통신판매업체의 허위·과장 표시광고 등에 대한 직권조사 계획 수립	3월	
2/4분기	의류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4월	
2/4분기	온라인 다크패턴 행위 점검 및 직권조사 실시	6월	
4/4분기	온라인상 거짓·기만행위 등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10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이해관계자 등과의 회의·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전자상거래 분야 조사 및 시정의 효율성 및 적실성 제고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패딩 충전재 혼용률 허위표시 등 실태 파악을 위한 플랫폼사 의견청취	1분기
간담회	다크패턴 행위 법 집행기준 설명 및 인터페이스 개선 관련 업계 의견청취	1분기
간담회	온라인 의류판매 분야 허위·과장 표시광고 등 개선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사 의견청취	2분기

□ 기대효과

○ 국민생활과 밀접한 전자상거래 분야를 적극 점검·시정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소비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

□ 관련 재정사업 내역: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2	'23	'24	'25			
전자상거래 분야 사건처리건수	16	24	21	21	최근 3개년 평균 실적(20.3건)보다 3%(0.6건) 상향한 21건으로 설정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공정거래법, 표광법 또는 전상법으로 경고 이상 사건처리 시 1건, 그 외 무혐의, 심사절차종료, 종결처리 등으로 사건처리 시 0.5건으로 산정 후 합산	사건처리시스템, 의결서, 공문, 보도자료, 내부결재문서 등

* 실적 수치도 목표치 측정방법과 동일한 가중치 부여 후 합산한 것임

3 다단계·방문판매·할부거래 분야 소비자피해 방지(Ⅳ-1-③)

□ 추진배경

○ 다단계·방문판매 등 특수거래 및 할부거래 분야 관련 정보제공, 교육, 홍보 등을 강화하여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 지원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적극적인 피해 예방 교육·홍보를 통해 소비자피해를 예방

○ 다단계·방문판매 등 특수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주요정보 공개 및 상호·주소·전화번호, 자본금 등 등록변경사항 공개

○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수요자 맞춤형 홍보·교육활동 추진 및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정보 제공 플랫폼 ‘내상조 찾아줘’ 운영 지속

< '2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2024년 4/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1월	
	2024년 4/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1월	
2/4분기	2025년 1/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4월	
	2025년 1/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4월	
	대학생 대상 불법 다단계로 인한 피해 예방 홍보	5월	
	불법 피라미드 피해 예방 홍보	6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공개	6월	
3/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	7월	
	2025년 2/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7월	
	2025년 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7월	
	노인 대상 특수거래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8~9월	
4/4분기	2025년 3/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10월	
	2025년 3/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10월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	11월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지방자치단체 특수거래 분야 담당자 순회 교육	11월	
	사회초년생(고3 수험생) 대상 피해 예방 교육	11~12월	
상시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정보제공 플랫폼 '내상조 찾아줘' 운영	-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공제조합, 사업자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을 바탕으로 정책수요자 및 현장의 의견수렴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다단계·방판 공제조합)	불법 다단계 업체에 대한 처리방향을 논의	'25.1월
회의 (선불식 할부거래 공제조합)	공제계약 형태의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피해보상계약 관련 담보율 조정 협의	'25.1월
회의 (교수 등 전문가, 소비자원)	구독경제 관련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안 논의	'25.2월
회의 (다단계·방판 공제조합)	대학생·노인층 불법 다단계 피해예방 홍보계획 수립	'25.3월
회의 (유관기관 등)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업체에 대한 처리방향을 논의	'25.3월
간담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사업자 대상 의견수렴	'25.3월
회의 (선불식 할부거래 공제조합)	선불식 할부거래 결합상품 관련 피해예방 홍보계획 수립	'25.3월
교육 및 간담회 (특수거래 분야)	특수거래 분야 지자체 교육 및 법 집행 관련 현안 및 애로사항 파악	'25.11월
회의 (공제조합, 지자체, 사업자 등)	특수분야(다단계 및 선불식 할부거래) 업계 현안 파악을 통한 소비자피해 예방	상시

□ 기대효과

○ 특수거래 및 할부거래 분야 관련 교육·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시장 신뢰도 개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2	’23	’24	’25			
특수거래 및 할부거래 분야 정보제공 · 교육 · 홍보 건수	19	26	27	27	○ 최근 3개년 평균 실적(24건)보다 12.5% 상향한 27건을 ‘25년 목표치로 설정	연간 특수거래 및 할부거래 분야 정보제공 건수(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 등 배포 건수, 기타 인터뷰 등), 교육 · 간담회 등 개최 건수	○ 공정위 홈페이지, 유튜브, SNS 등 게시물 ○ 리플렛, 책자 등 각종 인쇄출판물 ○ 영상, 웹툰 등 각종 시청각 자료
특수거래 및 할부거래 분야 제도개선 건수	8	7	7	7	○ 최근 3년간 평균실적(7.3건)과 동일한 7건을 ‘25년 목표치로 설정	법령, 고시, 예규, 지침, 가이드라인 등 제 · 개정 및 시스템, 웹 등 개선 건수	○ 법령, 고시, 예규, 지침, 가이드라인 등 제 · 개정 및 시스템, 웹 등 개선 관련 보도자료, 시청각 자료 등 각종 자료

④ 다단계·방문판매·할부거래 및 약관 분야 법위반행위 시정(Ⅳ-1-④)

□ 추진배경

○ 소비자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다단계·방문판매 등 특수거래 및 할부거래 분야 사업자를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제재할 필요

○ 소비자피해 방지 및 건전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하여 불공정 약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시정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특수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하여 소비자피해 확산을 차단

* 다단계·후원방문·방문·전화권유 판매 및 계속·사업권유 거래 등

** 대금을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향후 장례 등의 서비스를 공급받는 거래

- 다단계판매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미등록 다단계판매행위, 법정 후원수당 지급 한도 초과 등 반복적 법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규제회피 의심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 영업행위,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유인행위,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및 법정 보전비율 준수의무 위반 등 법 위반행위 집중 점검

* ('23년 신설) 계약체결일, 납입한 선수금 및 납입횟수, 폐업 시 지급의무자 등을 연 1회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불공정약관 점검 및 시정

- 소비자원 실태조사 등 소비자 측 의견, 모니터링 결과 등을 참고하여 헬스장 등 건강관리 분야, 공연계 멤버십 선예매 등 여가 분야, 재능마켓 및 배달플랫폼 등 민생 분야, 신유형 상품권 분야 등 이용약관의 불공정성 점검·시정

- 금융약관에 대한 신속한 심사 및 시정요청을 통해 금융 소비자 권익 제고 및 불공정 금융약관 통용 방지

< '2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특수거래 분야 직권조사 계획 수립	2월	
	신유형 상품권, 배달플랫폼 불공정약관 직권조사 계획 수립	3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통지의무 준수여부 직권조사 계획 수립	3월	
2/4분기	건강관리, 여가, 민생 분야 등 불공정약관 직권조사 계획 수립	4월~6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통지의무 준수여부 직권조사	4월~6월	
	특수거래 분야 직권조사(1차)	4월~6월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여부 직권조사 계획 수립	6월	
3/4분기	금융분야(은행・저축은행) 불공정약관 심사	7월~9월	
	건강관리, 여가, 민생 분야 등 불공정약관 조사	7월~9월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여부 직권조사	7월~9월	
4/4분기	금융분야(여신, 금융투자) 불공정약관 심사	10월~12월	
	건강관리, 여가, 민생 분야 등 불공정약관 시정	10월~12월	
	특수거래 분야 직권조사(2차)	11월~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등의 현장의견을 청취하여 약관심사 및 특수거래 분야 조사 업무의 효율성 및 적실성 제고

구 분	내용	세부일정
설명회	금융분야 불공정약관의 효율적 개선을 위한 금융업계, 금융감독원 등과 업무 설명회를 통해 현장의견 청취	1분기
회의	문화콘텐츠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불공정약관 점검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 전문가 의견 청취	2~3분기
간담회	특수거래 분야(다단계 및 상조 등) 조합,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대상 간담회 참석을 통한 현장의견 청취	4분기

□ 기대효과

○ 특수거래 및 할부거래 분야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시장질서를 개선

○ 최근 수요 증가와 관심이 집중되는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해 불공정약관의 통용을 방지하고 소비자 권익 제고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 관련 재정사업 내역: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2	'23	'24	'25			
특수 · 할부거래 분야 사건처리 건수	26.8	14.0	16.5	17.0	직전 실적치(16.5건) 대비 3% 상향한 17건으로 설정 * '22년 실적치의 경우 코로나 기간 중 조사가 어려웠던 사건을 '22년도에 집중 완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연간 특수 · 할부거래 분야 사건처리(시정명령 이상 안건상정, 경고 · 과태료, 무혐의) 건수 [처리유형별 가중치(시정명령 이상 1, 경고·과태료 0.5, 무혐의 0.25)를 부여하여 전체 처리 건수 산정]	사건처리시스템, 의결서, 공문, 보도자료, 내부 결재문서 등
불공정약관 시정을 위한 직권조사 수	11	11	11	11	3년 평균 실적(11건)을 감안하여 산출 * 목표치 11건(비금융분야 8건, 금융분야 3건)은 3년 평균치로서, 약관심사 담당 8명이 각각 1건의 비금융분야 직권조사를 수행하면서 많은 양의 3개 금융분야 약관('23년 3,696개→'24년 4,205개)과 신고사건 및 국민신문고('23년 1,371건→'24년 1,435개)를 분담하는 점을 감안하여 설정	불공정약관 시정을 위해 직권조사한 건수 [관련법에 따라 금융위(금감원)에서 통보한 금융약관 검토 · 시정요청한 건수 포함]	공정위 사건처리시스템 및 온나라 결재 시스템

성과목표Ⅳ-2	소비자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비자권익을 보호한다.

(1) 주요 내용

□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

○ **신유형 제품의 등장 및 온라인 소비 확대** 등 급변하는 소비환경에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관리 역량 제고**

-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위해 요소**를 신속 효과적으로 감지하여 제때 대응할 수 있도록 **위해정보 제출기관 확대**

-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유통 중인 위해제품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즉시 차단하기 위한 **위해제품 감시 및 시정사업 추진**

○ 아울러, 소비자가 스스로 위해 정보 등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정보 제공 및 교육 강화**

□ 소비자 역량강화 및 소비자 지향적 제도적 기반 확충

○ **(제도개선 발굴)**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는 제도 개선사항을 중점 발굴하여, 이를 소비자정책 전문위원회를 통해 심층 논의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개선

○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소비자의 제품선택권 제고 및 알뜰한 소비생활 지원을 위해 국민실생활 밀접품목 등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 **(기만행위 감시 강화)** 소비자 기만행위 등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점검·시정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

○ **(소비자중심경영(CCM) 확산)** 기업들이 경영활동 전반을 소비자 지향적으로 운영하고, 자율적으로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할 수 있도록 소비자중심경영(CCM) 문화 확산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2	'23	'24	'25			
소비자 권익제고 여건 조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	70.9	78.6	81.4	77.8	최근 3개년 평균 실적 77.0점에서 1% 상향하여 목표치 설정	11점 척도에 의한 설문조사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용역기관 실시)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기술 발전으로 **신기술·신유형 거래**가 확대되면서 기존에는 예상치 못한 **소비자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

- 융·복합 제품 등으로 인한 새로운 위해 요소를 신속·효과적으로 인지하기 위해서는 **안전 감시망 강화**가 필요

○ **해외직구 확대*** 및 **온라인플랫폼 이용 급증**에 따라 소비자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위해재화의 국내 유입이 확산

* 해외직구 거래액 : ('21)5.1조원 → ('22)5.9조원 → ('23)6.6조원 → ('24)7.9조원

- 이러한 **온라인 중심의 소비 구조**에서 기존의 소비환경보다 위해제품의 **확산속도 및 파급력**이 급격히 증대되는 문제

□ 갈등요인

○ 위해정보 제출기관 신규 지정·운영과정에서 **업무 증가** 등을 이유로 **대상기관이 협조**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 가능성

○ 해외위해제품 차단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및 입점 업체의 매출 감소를 동반**하게 되므로 이들 사업자에 의한 **반발 가능성** 존재

□ 갈등관리계획

○ **소비자안전센터 위해감시시스템(CISS)**으로 수집되는 **안전 정보**를 위해정보 제출기관과 상호 공유함으로써 **참여 유인 제공**

- 장기적으로는 위해정보의 품질·양 등을 기준으로 제출기관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해재화의 차단 필요성·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한편,

- 자발적인 위해제품 차단 노력이 **안전한 플랫폼이라는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강조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Ⅳ-2-①)

□ 추진배경

□ 추진배경

○ 최근 **기술 발전 및 디지털 전환**으로 **소비환경이 급변**하면서 **소비자 안전 확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

- **AI, IOT 등 신기술 제품**으로 소비자 편의가 증대하는 가운데, **안전사고도 복잡·대형화**되어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

  * 인천 전기차 화재 사건('24. 8월)

- 아울러, 해외직구 및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소비가 증가하면서 **안전성이 취약한 저가 제품**의 유입 등도 증가하는 추세

○ 이러한 이유로 **해외 소비자정책 기구**에서도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안전 확보 등을 **주요 의제로 선정**하여 논의 진행

  * OECD 소비자 장관회의('24. 10월, 프랑스)

○ 특히 소비자안전 확보는 **소비자의 생명·신체권 등과 직접 관계**된다는 점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점과제**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소비자안전 감시망 강화

- 그간 **주요 병원, 소방서** 등을 중심으로 **위해정보 제출기관을 지정***하여 위해정보를 수집 및 활용 중

  * 병원 58개,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 17개, 학교안전공제회, 가스안전공사 등 총 77개

- 소비환경 변화에 따라 폭넓은 위해정보 수집이 요구되는바 **다양한 안전기관 중심으로 위해정보 제출기관 확대 지정**

- 위해정보 제출기관 및 소비자 신고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 발령**

- 아울러, 해외 위해제품에 대한 관계부처의 **리콜 현황**을 **점검·보도**하여 **위해제품 차단 및 안전기준 마련** 등에 활용

②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

- 소비자정보포털인 '소비자24'를 통해 **다양한 소비자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구매를 지원하는 한편, **이용자의 편의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 강구

- **학교 정규 교과·제도와 연계**된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미래세대 소비자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교육 추진

- 또한 관계기관·단체의 협력에 기반한 **민간 주도 소비자교육 활성화**를 통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

③ 위해제품유통 차단

- **민간단체를 통해** 국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위해제품*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판매중단 등 자진시정을 권고하여 차단**

  * 해외 리콜제품, 안전성 조사 등으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

- **'위해물품관리실무협의체*'**를 통해 관계부처와 위해제품 차단 실적 및 안전성 조사 계획 등을 **공유·협력하여 차단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참여기관을 확대**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

  * 공정위(주관), 소비자원, 국표원, 환경부, 관세청, 식약처, 제품안전관리원 등 7개 기관

- 특히, 알리·테무 등 해외직구 플랫폼의 위해제품 차단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자율제품안전협약* 가이드라인 제정 및 이행점검 추진**

  * '24.5.13. 공정위 알리·테무 간 자율제품안전협약 체결

< '2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위해제품 온라인 유통방지 모니터링 용역 사업계획 수립	3월	
	소비자교육 민간위탁 사업계획 수립	3월	
	상품비교정보 사업 추진계획 수립	3월	
2/4분기	위해제품 온라인 유통방지 모니터링 용역 사업수행자 선정 및 계약	4월	
	소비자교육 민간위탁 사업수행자 선정 및 계약	4월	
	제12차 해외위해물품관리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4월	
	상품비교정보 사업수행자 선정 및 계약	4~5월	
	소비자 위해제품 온라인 유통방지 자문회의(1차)	5월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1차)	5월	
	'소비자24' 시스템 개선 계획 수립	5월	
	제13차 해외위해물품관리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6월	
	위해제품 모니터링 및 자진시정 권고 수행 및 분기 보고	6월	
	'소비자24' 시스템 개선을 위한 사업수행자 선정 및 계약	6~7월	
3/4분기	소비자교육 실시 및 현장점검	7~11월	
	리콜 실적 보도	7월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 계획 수립	8월	
	소비자 위해제품 온라인 유통방지 전문가 자문회의(2차)	8월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2차)	9월	
4/4분기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	10월	
	제14차 해외위해물품관리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11월	
	비교정보 사업 수행 결과 보고	11월	
	'소비자24' 시스템 개선 완료 및 안정화	11~12월	
	위해제품 온라인 유통방지 모니터링 용역 수행 결과 보고	12월	
	'소비자24' 이용자 만족도 조사	12월	
	소비자교육 연간 수행 결과 보고	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위해정보 보유기관과 업무협의, ▲소비자교육 유관기관·단체와의 업무협의 및 현장점검, ▲위해제품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예정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소비자24' 콘텐츠 생산 등 업무위탁 관련 회의	'25.2월
회의	소비자교육 유관기관·단체 업무협의	'25.2월
회의	소비자위해제품 온라인 유통방지 전문가 자문회의	'25.5월
회의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 후보기관과의 업무협의	'25.6월
현장방문	소비자교육 현장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	'25.7월~11월
회의	소비자위해제품 온라인 유통방지 전문가 자문회의	'25.8월
회의	소비자교육 위탁 사업 추진결과 보고	'25.12월

□ 기대효과

○ **위해제품의 감시, 차단 및 예방** 등에 이르는 全 과정에서 **촘촘한 안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소비자 안전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 원)

	회계구분	'24	'25
선진소비자정책 추진 (Ⅲ-1-재정①)			
① 선진소비자정책 추진(1431-600)	일반회계	11.71	13.89
■ 소비자 위해제품 감시 및 시정		0.56	0.56
소비자권익증진 지원 (Ⅲ-1-재정②)			
① 소비자권익증진 지원(1441-610)	일반회계	30.18	12.34
■ 소비자교육 실행		4.02	4.02
■ 상품비교정보생산 용역		3.80	3.80
소비자보호 인프라 운용 (Ⅲ-1-정보화①)			
①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1451-621)	일반회계	14.18	12.28
■ 인증정보 등 기능개선		2.19	2.19
■ 소비자정보 위탁운영		1.38	1.38
■ 인지도 확산을 위한 콘텐츠 제작		0.65	0.6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2	'23	'24	'25			
위해제품 차단 건수(신규)	-	-	-	7,800	최근 3년간 실적('22년 1,059건, '23년 1,841건, '24년 7,565건)이 연속 상승하는 추세에 있어, 목표치 설정기준을 전년도 실적으로 하여 3% 상향함	해외위해제품 적발 및 시정조치(판매차단 등 접수)	사업결과보고서
소비자 안전정보 제공 건수(신규)	-	-	-	163	최근 3년간 실적('22년 125건, '23년 129건, '24년 149건)이 연속 상승하는 추세에 있어, 목표치 설정기준을 최근 3년간 실적치의 평균 증가율을 고려하여 전년보다 10% 상향함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소비자24'를 통해 제공되는 안전정보(비교공감, 피해예방, 인·허가정보 등) 생산·제공 건수	소비자종합지원 시스템 기록
위해정보 제출기관 신규 지정 건수(신규)				2	최근 3년간 실적('22년 1건, '23년 0건, '24년 2건)이 등락하는 경우로, 상승국면의 추세치 수준에 따라 목표치를 설정함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위해정보 제출기관 신규 지정 건수	고시 개정

2 소비자권익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Ⅳ-2-②)

□ 추진배경

○ 소비자가 시장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약자로서 충실히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

- 정보·자금이 부족한 소비자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사업자가 소비자 친화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

- 국제 소비자 정책당국 및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 형성하여 국제 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국제 동향을 공유·논의

○ **온라인**상 소비자 **기만 광고**에 대한 **감시 및 시정**을 강화하여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 조성

○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정보 제공 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제도개선 발굴)**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는 제도 개선사항을 중점 발굴하여, 이를 소비자정책 전문위원회를 통해 심층 논의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개선

-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거나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 및 발굴

- 발굴된 개선사항 중 전문가 검토, 부처 협의 등이 필요한 사안을 소비자정책 전문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층 검토 및 논의

- 개선이 필요한 법령 및 제도에 대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에 개선 권고

○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응하여 업계 자율협약,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용량 변경을 통한 꼼수 가격인상에 대응

- 유통업체('23.12.20.) 및 제조업체('24.1.25.)와 체결한 자율협약을 '25년도에도 연장하여 약 1만여개 상품에 대한 용량 변동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운영 중

- 분기별로 용량 변동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용량 축소 상품 정보를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유('24년도 3회)하고 있으며 '25년도에도 분기별 정보를 공유할 계획

-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적발 시 지자체에게 통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환경부 및 식약처 고시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 부처에 해당 사실 통보 예정

*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및 시행('24.8.3.)

○ **(SNS 뒷광고 모니터링)**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부당광고*(뒷광고)로 의심되는 SNS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자진시정을 유도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추천·보증인과 광고주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공개하였는지 여부(위치, 방식, 내용, 언어 등)

- 추천·보증 광고가 주로 나타나는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에 게시된 후기 형태 게시물을 대상으로 선정

- 모니터링된 법 위반 의심 게시물에 대하여 인플루언서, 광고주 등에 자진시정 요청

* 자진시정에는 시정을 요청받지 않은 다른 게시물에 대한 시정(추가시정)도 포함됨

○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모니터링)** (사)소비자교육중앙회를 통해 체육시설업의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를 실태조사

* 중요정보고시에 따라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 신청서 모두에 표시하여야 함

- 소비자 이용률이 높고 가격표시제 준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체력단련장(헬스장) 등을 대상으로 인구·업체 수를 고려하여 조사 대상(지역 및 업체) 선정

- 조사 결과 미준수 업체에 대해서는 자율시정을 권고하고, 최종 미시정될 경우 이행확보를 위해 조사부서에 모니터링 결과와 미시정 업체 명단 전달

○ (**결혼서비스 가격공개**) 추가금 부과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에 **가격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원**

- 업무협약 체결한 **주요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의 회사 누리집 또는 소비자원 '참가격'에 **필수·선택품목**의 **가격**을 **공개**

- **소비자원**을 통해 구체적인 가격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참가격'에 **지역별 가격정보***를 공개하고, **가격 동향**을 **분석**하여 공개

* 지출액 적은 쪽부터 전체의 25%, 50%(중위값), 75%에 해당하는 금액

○ (**AI워싱 실태조사**) **AI기술**을 활용하지 않았거나 제한적으로 적용했음에도 **AI제품**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의 실태를 조사하여 **유형화**하고,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판단기준** 도출

○ (**소비자중심경영(CCM) 활성화**) 기업들의 경영활동 전반이 소비자 지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 : 소비자 중심으로 기업 활동을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 우수 인증기업 발굴 및 포상, 다양한 홍보활동 등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인증제도 인지도 제고

- 인증기업 및 인증 준비 기업들을 대상으로 교육, 멘토링, 1:1 상담 등을 실시하여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소비자중심경영 확산

- 인증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고시 개정 추진

○ **(국내외 협력 및 교류)** 소비자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소비자 권익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주요 국제회의 참석을 통해 정책 동향 공유

- 올해는 소비자의 날 제정 30주년으로, 소비자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정책 비전을 공유

- 상·하반기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참석하여 글로벌 소비자 정책 의제 논의 및 정책 동향 공유('25.4.,11.)

- 제10차 아시아 소비자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선진 소비자정책을 홍보하고 국제 소비자 이슈 대응 논의('25.9.)

< '2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25년도 SNS 부당광고 상시 모니터링 추진계획 수립	1월	
	주요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 자율 가격공개	1월	
	소비자지향성 제도개선 과제 수요조사	1월	
	2024년도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모니터링 결과 발표	2월	
	2025년도 CCM 인증제도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	3월	
	2024년도 SNS 부당광고 상시 모니터링 결과 발표	3월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모니터링 추진계획 수립	3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시행	3월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모니터링 사업 결과 보고	3월	
2/4분기	소비자지향적 개선사항 예비과제 부처 의견 조회	3~6월	
	OECD 국제 회의 참석	4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	5~6월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모니터링 사업 결과 보고	6월	
	결혼서비스 지역별 가격정보 공개	6월	
3/4분기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모니터링 사업 결과 보고	7월	
	AI워싱 표시·광고행위 실태조사 결과 보고	8월	
	소비자지향성 과제 소비자정책위원회 안건 상정	8월	
	결혼서비스 가격동향 분석정보 공개	8월	
	CCM 우수기업 포상심의	8월	
	CCM 인증기업 CCO(고객최고책임자) 대상 정기교육	9월	
	CCM 인증 심의위원회 개최	9월	
	아시아 소비자정책포럼 개최	9월	
4/4분기	OECD 국제 회의 참석	10월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모니터링 사업 결과 보고	12월	
	CCM 우수기업 포상 및 인증서 수여식	12월	
	소비자지향성 과제 소비자정책위원회 안건 상정	12월	
상시	참가격을 통한 용량 변동 정보제공	연중	
	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 운영	연중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관련 전문위원회 개최	연중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사항 검토 및 발굴	연중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법령·제도 발굴을 위해 대국민 공모전을 실시하고, 민간전문가 의견수렴 및 검토를 위해 전문위원회 개최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공모전	소비자지향성 제도개선 대국민 공모전 개최	'25.2~5월
회의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관련 전문위원회 개최	연중 상시

□ 기대효과

○ 소비자 친화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경영을 활성화하여 소비자피해 사전예방, 안전보호 강화 등으로 소비자 권익을 증진

○ 가격 등 중요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어 물품 구매시 합리적 선택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

○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여 소비자 보호 확대

○ 국제협력 및 회의 참석을 통해 소비자정책 국제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소비자 당국으로서 위상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 원)

	회계구분	'24	'25
선진소비자정책 추진 (Ⅲ-1-재정②)			
① 선진소비자정책 추진(1431) ■ 선진소비자정책 추진(600) -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 소비자중심경영(CCM) 활성화	일반회계	 0.29 1.50	 0.29 1.5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2	'23	'24	'25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노력	8.6	9	10.2	9.5	최근 3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의결건수 및 전문위원회 검토 안건 수 합의 평균(9.2) 대비 3%상향한 9.5로 설정	소비자정책위원회 의결 안건수(가중치0.6) + 전문위원회 검토 안건 수(가중치0.4)	소비자정책위원회 보도자료 및 전문위원회 검토 안건
소비자정책분야 정보제공·홍보 건수	7	16	13	12	최근 3년간 평균실적(12.0건)에서 3%상향한 12건으로 설정 * 정책수요자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통한 정보제공·홍보활동을 성과지표로 설정	연간 소비자정책 분야 정보제공 건수(보도(참고)자료, 인터뷰, 간담회, 제도개선 관련 정보제공 등)	ㅇ 보도(참고)자료 ㅇ 공정위 홈페이지, 유튜브, SNS 등 게시물 ㅇ 리플렛, 책자 등 각종 인쇄 출판물

Ⅳ 환류 등 관련계획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가. 점검 기본방향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성과관리 시행계획 이행상황에 대한 자체점검 실시

○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 관리과제별 추진정도, 추진과정상의 문제점 발굴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발굴

□ 주요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성과지표에 따라 상·하반기 자체평가 실시

나.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 경쟁정책, 대기업집단 정책 등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민간 전문가 21명, 내부위원 1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

○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5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 혁신경쟁촉진, 대기업집단, 상생협력, 소비자, 행정관리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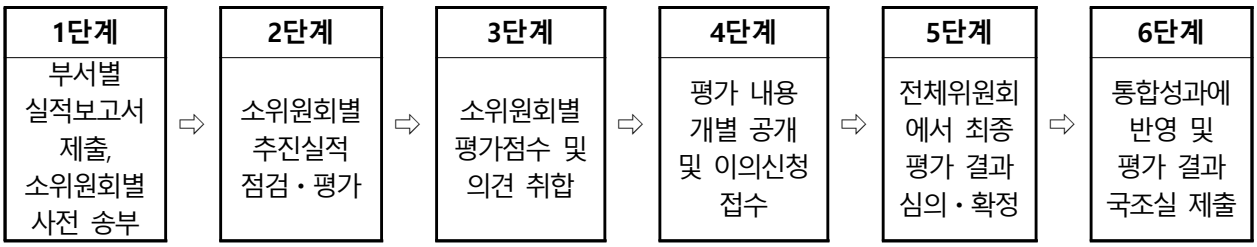
○ 전체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 개최

- (전체회의) 성과관리 전략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자체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심의
- (소위원회) 소관 분야별 성과관리 전략계획·시행계획, 자체평가계획 검토, 소관 분야별 평가대상과제 점검·보완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 자체평가위원회 최종 평가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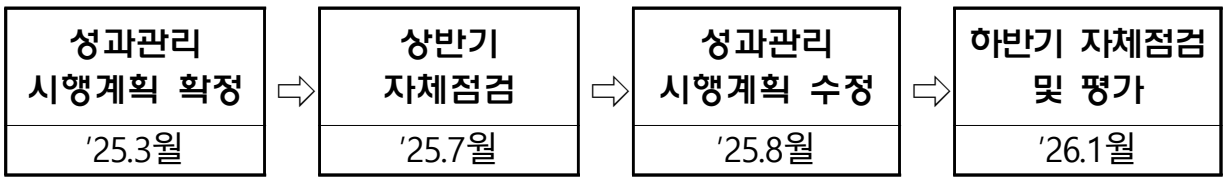


다. 이행상황 점검 일정

□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관리과제 이행상황을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자체 점검 및 평가 실시('24.7월, '25.1월)

○ 관리과제 소관 부서별로 추진정도를 자체점검한 후 자체평가위원회에 보고

【 2025년도 자체평가 주요일정 】



□ 자체점검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자체평가 지원부서 중에서 3개 평가지원팀을 구성

○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 개최, 평가 및 심의 등 회의 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업무를 수행

【 평가지원팀별 임무 및 역할 】

평가지원 총괄팀	평가지원 1팀	평가지원 2팀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 소위원회 운영 지원	· 혁신경쟁촉진 소위원회 · 대기업집단 소위원회	· 상생협력 소위원회 · 소비자 소위원회 · 행정관리역량 소위원회

2. 평가결과 환류체계

가. 정책에 대한 환류

□ 평가결과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제언을 과제 소관부서에 안내하고, 개선·보완필요사항에 대한 조치·이행계획을 수립

○ 개선·보완필요사항은 다음 연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자체평가 시 이행 여부를 평가

나. 통합성과평가와 연계

□ 성과상여금 및 성과연봉 지급 시 자체평가결과를 반영

○ 본부 4급 이상, 지방사무소 과장(5급)의 성과연봉 책정을 위한 성과평가 시 조직성과에 자체평가 점수를 36%(18점) 반영

【 통합성과평가 체계 】

(단위: 점)

평가 대상	합계	조직성과(50)				개인성과 (50)	(부)위원장 가점*
		계	BSC 평가	자체 평가	업무 다면		
고위공무원	100	**50**	30.0	18	2.0	**50**	위원장 3.0점 부위원장 1.0점
과장급	100	**50**	30.0	18	2.0	**50**	위원장 3.0점 부위원장 1.0점
복수직 서기관	100	**50**	30.0	18	2.0	**50**	-
지방사무소 과장(5급)	100	**50**	30.0	18	2.0	**50**	-

* 위원장은 최종평가 단계에서 3.0점 이내 가점 부여
부위원장은 개인성과평가 단계에서 1.0점 이내 가점 부여

○ 본부 5급 이하 직원의 경우 성과연봉 예산의 20%를 조직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부서별로 차등 지급

다. 인사·조직관리 등과의 연계

□ **(인사)** 4급 이상 직원의 직위 및 직급 승진 시 통합성과평가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

○ 5급 이하 직원의 승진 및 해외교육 훈련에 활용하고, 성과평가 우수 부서 직원에 대해 단기 해외연수기회 부여

□ **(조직)** 정원조정 및 결원 충원 시 조직단위 성과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조직 보강·개편

라. 평가결과 공유·확산

□ **우수·미흡사례를 전파·공유하여 실적 향상을 지원**

○ 자체평가결과 나타난 우수·미흡사례는 업무에 참고·반영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 등에게 전파

○ 자체평가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정기적인 이행상황 점검, 평가과정 및 결과를 전직원에게 전파

- 워크숍, 간부회의, 내부 업무보고 등을 통해 자체평가의 중요성·필요성 강조

□ 제도개선 및 보완사항 발굴

○ 미흡 과제에 대해서는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진단하고 정책 개선 전략, 조직·인사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

- 마련된 개선방안은 다음 연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등에 반영

붙임1-1 **성과지표 현황**

1. 총괄현황

(단위: 개)

구분		성과지표					
		소계	지표성격				정량지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전략목표	4	7	0 (%)	0 (%)	5 (71.4%)	2 (28.6%)	6 (85.7%)
성과목표	9	13	0 (%)	0 (%)	0 (%)	13 (100.0%)	0 (0.0%)
관리과제	24	47	0 (0%)	5 (10.6%)	42 (89.4%)	0 (%)	47 (100.0%)

2. 전략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전략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9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1. 규제개혁으로 혁신을 촉진한다.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 발굴 건수	과제발굴 1건당 1점, 과제발굴을 위한 사업자단체 또는 전문가 등과의 간담회 1건당 1점	59.1	정량	산출	국정과제
	대기업집단 시책 관련 제도개선 건수	법령, 고시 개정 횟수 (단, 다수 제도개선 건이 동일 법령 개정으로 이루어질 경우 복수 인정)	4	정량	산출	국정과제
2. 공정한 경쟁원칙을 확립한다.	답합 및 불공정행위 조치 건수	카르텔 시정 건수(경고 이상), 민생밀접 분야 불공정행위 시정조치 건수(경고 이상 법위반 조치 및 연성집행 건수)	93	정량	산출	국정과제
	사익편취·부당지원행위 시정조치 건수	관련 분야 경고 이상 법위반 조치 건수	4	정량	산출	국정과제
3.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정당한 보상을 확보한다.	하도급분야 법위반 행위 조치건수	사건처리시스템에서 경고 등 조치 요청건수 합산 (안건상정 기준, 하도급법 제12조의3 위반 건 포함)	425	정량	산출	국정과제
	거래개선 체감도	매년 진행되는 서면실태조사(가맹·유통분야) 거래개선체감도 값의 평균값	85.5	정성	결과	국정과제
4. 소비자 안전환경을 조성한다.	소비자상담 접수 건수 대비 피해해결 조치 건수 비율	소비자상담센터접수건수 대비 피해해결 조치한 건수의 비율 = (소비자단체, 지방소비생활센터피해해결 조치건수의 합) / (소비자단체, 지방소비생활센터의 상담 접수 건수*의 합) × 100	39.6	정량	결과	국정과제

3.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5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Ⅰ. 규제개혁으로 혁신을 촉진한다.						
1.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결합심사를 효율화한다.	①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	11점 척도에 의한 설문조사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80.5	정성	결과	국정과제
	② M&A신고대상 회사 만족도	11점 척도에 의한 설문조사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78.6	정성	결과	국정과제
2. 대기업집단 규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대기업집단 시책 업무 수행 노력에 대한 만족도	11점 척도에 의한 설문조사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81.7	정성	결과	국정과제
3. 공정거래정책 추진 기반 확충을 통해 법집행 및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CP 제도에 대한 만족도	11점 척도에 의한 설문조사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74.9	정성	결과	국정과제
Ⅱ. 공정한 경쟁원칙을 확립한다.						
1. 디지털 시장 등에서의 시장반칙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한다.	① 독과점 폐해 시정 만족도	11점 척도에 의한 설문조사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77.1	정성	결과	국정과제
	② 카르텔 정책 만족도	11점 척도에 의한 설문조사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79.9	정성	결과	국정과제
2. 부당내부거래에 엄정히 대응하고, 소유지배구조 및 거래관행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한다.	사건처리 고객만족도	전문가(50명)를 대상으로 11점 척도에 의한 설문조사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73.6	정성	결과	국정과제
Ⅲ.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정당한 보상을 확보한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보장되는 거래환경을 조성한다.	① 하도급거래 개선도	7점 척도 설문조사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66.4	정성	결과	국정과제
	② 동반성장 업무추진 만족도	11점 척도 설문조사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76.4	정성	결과	국정과제
2. 유통 분야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고, 甲-乙간 공정한 거래기반을 마련한다.	① 가맹분야 고객만족도	11점 척도 설문조사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55.2	정성	결과	국정과제
	② 유통·대리점분야 고객만족도	유통 및 대리점 분야 고객 만족도의 평균값	69.3	정성	결과	국정과제
Ⅳ. 소비자 안전환경을 조성한다.						
1. 소비자 기만행위 등 불공정 피해를 방지한다.	피해 빈발분야 소비자 보호에 대한 전문가 평가	11점 척도에 의한 설문조사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80.5	정성	결과	국정과제
2. 소비자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한다.	소비자 권익제고 여건 조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	11점 척도에 의한 설문조사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77.8	정성	결과	국정과제

4.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5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Ⅰ. 규제개혁으로 혁신을 촉진한다.							
1.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결합심사를 효율화한다.							
	① 시장분석 및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경쟁제한적 규제개선과제 개선 추진 [민생]	합의비율[(개선과제 ÷ 발굴과제)×100] 1%당 1점, 실무회의·조정회의·간담회·세미나·심포지움 1건당 1점	88.4	정량	산출	국정과제
		시장분석을 통한 시장구조 개선방안 마련 건수	시장분석보고서 작성 및 시장분석연구회 개최 건수(1건당 1점), 시장분석 결과를 내·외부에 제공한 건수 (1건당 1점)의 합	3	정량	산출	국정과제
	② 경쟁제한 우려가 큰 분야의 기업결합 심층심사 강화	기업결합 심층심사 처리건수	국장 이상 전결 건수 및 안건상정 건수 합산(안건상정 후 기업결합 철회 건 포함)	38	정량	산출	국정과제
		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의 의견조회를 실시한 심사 건수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계부처 등 의견조회 건수	12	정량	산출	국정과제
		기업결합 심사 관련 홍보 건수	기업결합 심사 관련 홍보 건수	12	정량	산출	국정과제
	③ 선진화된 M&A 심사제도의 안착	기업결합 제도 관련 외부 소통(간담회, 설명회, 해외 경쟁당국과의 접촉 등) 건수	간담회, 설명회, 해외 당국 협의 등 정책 소통 건 수	10	정량	산출	국정과제
2. 대기업집단 규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① 대기업집단 시책의 합리적 개선	대기업집단 시책 관련 제도개선 등 정책수립 추진 실적	법령, 고시, 예규 개정 등 제도개선 건당 1점(다수 제도개선 건이 동일 법령 개정으로 이루어질 경우 복수 인정), 전문가 자문·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회의 건당 0.5점,	9	정량	산출	국정과제
	② 시장의 투명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대기업집단 제도운영	지주회사 전환 및 CVC 안착 지원 건수	①관계부처 협의체 회의 개최건수, ②CVC 제도개선 성과 홍보건수, ③업계 대상 교육 실시건수, ④매뉴얼 개정 등 제도운영 개선 사항을 합산	8	정량	산출	국정과제
3. 공정거래정책 추진 기반 확충을 통해 법집행 및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①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 및 분쟁조정 제도 활성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P) 등급평가 신청 기업 수	CP 등급평가 신청 기업 수의 합계	41	정량	산출	국정과제
		분쟁조정 조정 성립 및 조정안 제시 성과	분쟁조정 사건 처리유형별로 가중치를 부여한 점수의 합 * 조정안 제시 건당 3점, 조정성립 건당 1점, 조정 불	2,318	정량	산출	국정과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5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성립 건당 0.3점, 종결 건당 0.1점을 각 부여하여 합계한 점수				
	② 엄중하면서도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회의운영 및 제도정비	심의 및 법집행 관련 제도 개선 건수	법령, 고시, 예규, 지침 등 제·개정 건수 [법률의 경우 국회 제출(발의) 건수]	6	정량	산출	국정 과제
Ⅱ. 공정한 경쟁원칙을 확립한다.							
1. 디지털시장 등에서의 시장반칙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한다.							
	①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공정한 거래여건 조성	플랫폼 제도개선 추진률	관계부처 협의 0.2 학계·전문가 의견수렴 0.3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0.3 국회 법안설명 등 0.2	1	정량	과정	국정 과제
		플랫폼-입점업체간 상생협력 방안 시행 또는 이행점검 건수	플랫폼-입점업체간 상생협력 방안 시행 건 당 0.5건, 상생협력 방안 이행점검 건당 0.5건	2	정량	산출	국정 과제
	② 혁신분야 및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불공정행위 및 부당표시광고행위 시정 **[민생]**	혁신 분야 및 국민생활 밀접 분야 공정거래법 사건처리 건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위 행위 관련 동의의결 등 포함) 관련 안건상정, 경고, 무혐의(심사절차 종료 포함) 건수를 1 : 0.5 : 0.25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	13.8	정량	산출	국정 과제
		혁신 분야 및 국민생활 밀접 분야 표시광고법 사건처리 건수	표시광고법 관련 안건상정(동의의결 포함), 경고, 무혐의(심사절차 종료 포함) 건수를 1 : 0.5 : 0.25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	19	정량	산출	국정 과제
	③ 공정경쟁 확립을 위한 정책수립 및 교육·홍보활동	담합, 독과점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 추진 실적	법령, 고시, 예규, 지침, 가이드라인, 표준계약서, 정책보고서 등 정책 수립 건당 1점, 전문가·이해관계자 자문, 간담회 등 회의 건당 0.5점	12	정량	산출	국정 과제
		법위반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대외협력 실적	법위반 예방교육·간담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 해외진출 기업 교육, 이메일링 서비스(매월), 신고 포상금 홍보 건수 등 합산	15	정량	산출	국정 과제
	④ 담합 행위 시정 **[민생]**	담합 사건처리 건수	조치유형별 가중치를 부여한 카르텔 사건처리 건수 * 측정산식= [시정명령 이상 건수(안건상정 포함)*1]+(경고 건수*0.6)+(무혐의 건수*0.4)	85	정량	산출	국정 과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5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2. 부당내부거래에 엄정히 대응하고, 소유지배구조 및 거래관행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한다.							
	①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 및 대기업집단시책·공시의무 위반행위 제재	사익편취·부당지원 행위 사건처리 건수	조치유형별 가중치를 부여한 관련 분야 사건처리 건수 * 측정산식 = (안건상정 건수*1.0)+(경고 건수*0.5)+(심사절차종료·무혐의 건수*0.3)	8.8	정량	산출	국정과제
		중대한 공시위반으로 조치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수	기본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과태료를 부과받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수 *기본금액(건당)이 중요사항 공시 395만원, 대규모공시 1,090만원 초과인 위반	82	정량	산출	국정과제
		대기업집단시책 관련(지주회사 행위제한 위반 포함) 사건처리 건수	실적=(안건상정 건수*1.0)+(경고건수*0.5)+(무혐의·심사절차종료 건수*0.2)	24.2	정량	산출	국정과제
	② 소유지배구조 및 거래관행의 자발적 개선 유도	대기업집단 현황 정보공개 건수	대기업집단 현황 정보 공개 건수	10	정량	산출	국정과제
		공시제도 교육 등 예방 활동 실적	공시교육 1점, 안내서비스 0.3점, 국민신문고 회신 0.01점	11.13	정량	산출	국정과제
Ⅲ.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정당한 보상을 확보한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보장되는 거래환경을 조성한다.							
	① 하도급분야 공정거래기반 조성	납품단가조정제도 등 관련 하도급분야 제도개선 건수	법령, 고시, 예규, 지침, 표준계약서 등 제·개정 건수	10	정량	산출	국정과제
		하도급정책 관련 현장소통 건수	간담회, 설명회 및 홍보지 등 배포 건수	10	정량	과정	국정과제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 협약체결 기업수	기업들로부터 신청 받은 협약체결 건수	490	정량	산출	국정과제
	②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등 하도급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	기술유용 분야 법위반행위 사건처리 건수	하도급법 제12조의3 위반 사건처리건수 [(안건상정 건수)×1.0+경고 건수)×0.5 + (무혐의+과태료 +심사절차종료 건수)×0.25]	11.4	정량	산출	국정과제
		일반 하도급 분야 사건처리 건수	일반 하도급 분야 처리 사건 건수 [(안건상정 건수)×1.0+경고 건수)×0.5 + (무혐의+과태료 +심사절차종료 건수)×0.25]	165.3	정량	산출	국정과제
2. 유통 분야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고, 甲-乙간 공정한 거래기반을 마련한다.							
	① 가맹분야 불공정거래관행 개선 **[민생]**	가맹분야 제도개선 건수	법령, 고시, 예규, 지침, 표준계약서 등 제·개정 건수	8	정량	산출	국정과제
		제도의 현장 안착 촉진 활동	정책수요자 대상 제도 성과 점검, 제도 홍보, 교육 건수	12	정량	과정	국정과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5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② 유통·대리점분야 거래관행 개선 [민생]	유통·대리점 분야 제도개선 건수	법령, 고시, 예규, 지침, 표준거래계약서, 가이드라인 등 제·개정 건수	10	정량	산출	국정 과제
		유통·대리점정책 분야 현장소통 건수	간담회, 설명회 및 홍보지 배포 건수	10	정량	과정	국정 과제
		유통·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체결 기업 수	기업들로부터 신청받은 협약 체결 건수	38	정량	산출	국정 과제
	③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시정	가맹 분야 사건처리 건수	[(안건상정 건수)×1.0+경고 건수)×0.5 + (무혐의+심사절차종료 건수)×0.25] *과태료 부과 건 제외, 외생변수인 서울시·경기도 조사의뢰 건 제외(자체 성과역량보다는 특정 지자체의 다수의 의뢰 건수에 사건 처리 실적이 좌우되는 불합리 제거)	13.73	정량	산출	국정 과제
		유통·대리점분야 사건처리 건수	[(안건상정 건수)×1.0+경고 건수)×0.5 +(무혐의 건수)×0.1] *대리점의 경우 과태료 부과 건 제외	13.7	정량	산출	국정 과제
Ⅳ. 소비자 안전환경을 조성한다.							
1. 소비자 기만행위 등 불공정피해를 방지한다.							
	① 전자상거래·약관 분야 소비자피해 방지[민생]	소비자거래정책 분야 제도개선	법령, 고시, 예규, 지침, 가이드라인 등 제·개정 및 운영시스템 개선 건수, 표준약관 제·개정을 위한 안건상정 건수	10	정량	산출	국정 과제
		유관기관과의 협력활동	국회, 지자체,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세미나, 포럼, 간담회, 교육, 홍보 등 협력 활동 횟수	35	정량	과정	국정 과제
	② 전자상거래 분야 법위반행위 시정	전자상거래 분야 사건 처리건수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공정거래법, 표광법 또는 전상법으로 경고 이상 사건처리 시 1건, 그 외 무혐의, 심사절차종료, 종결처리 등으로 사건처리 시 0.5건으로 산정 후 합산	21	정량	산출	국정 과제
	③ 다단계·방문판매·할부거래 분야 소비자피해 방지	특수거래 및 할부거래 분야 정보제공·교육·홍보 건수	연간 특수거래 및 할부거래 분야 정보제공 건수(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 등 배포 건수; 기타 인터뷰 등), 교육·간담회 등 개최 건수	27	정량	산출	업무 계획 3-가
		특수거래 및 할부거래 분야 제도개선 건수	법령, 고시, 예규, 지침, 가이드라인 등 제·개정 및 시스템, 웹 등 개선 건수	7	정량	산출	업무 계획 3-가
	④ 다단계·방문판매·할부거래 및 약관 분야 법위반행위 시정	특수·할부거래 분야 사건처리 건수	연간 특수·할부거래 분야 사건처리(시정명령 이상 안건상정, 경고·과태료,	17.0	정량	산출	업무 계획 3-가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5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무혐의) 건수 [처리유형별 가중치(시정명령 이상 1, 경고·과태료 0.5, 무혐의 0.25)를 부여하여 전체 처리건수 산정]				
		불공정약관 시정을 위한 직권조사 수	불공정약관 시정을 위해 직권조사한 건수 [관련법에 따라 금융위(금감원)에서 통보한 금융약관 검토·시정한 건수 포함]	11	정량	산출	국정과제
2. 소비자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비자권익을 보호한다.							
	①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	위해제품 차단 건수	해외 위해제품 적발 및 시정조치(판매차단 등 접수) 건수	7,800	정량	산출	국정과제
		소비자안전정보 제공 건수	소비자24를 통해 제공되는 안전정보(비교공감, 피해예방, 인·허가정보 등) 생산·제공 건수	163	정량	산출	국정과제
		위해정보 제출기관 신규 지정 건수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위해정보 제출기관 신규 지정 건수	2	정량	산출	국정과제
	② 소비자권익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노력	소비자정책위원회 의결안건수(가중치 0.6)+ 전문위원회 검토안건수(가중치0.4)	9.5	정량	산출	국정과제
		소비자정책분야 정보제공·홍보 건수	연간 소비자정책분야 정보제공 건수(보도(참고)자료, 인터뷰, 간담회,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제공 등)	12	정량	산출	국정과제

붙임1-2 관리과제와 국정기조·부처업무계획 등 연계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Ⅰ. 규제개혁으로 혁신을 촉진한다.		
Ⅰ-1.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결합심사를 효율화한다.		
	① 시장분석 및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민생]**	국정29-1번
	② 경쟁제한 우려가 큰 분야의 기업결합 심층심사 강화	국정29-2번
	③ 선진화된 M&A 심사제도의 안착	국정29-2번
Ⅰ-2. 대기업집단 규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① 대기업집단 시책의 합리적 개선	국정29-5번
	② 시장의 투명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대기업집단 제도운영	국정29-5번
Ⅰ-3. 공정거래정책 추진 기반 확충을 통해 법집행 및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①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 및 분쟁조정 제도 활성화	국정 30-3
	② 엄중하면서도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회의운영 및 제도정비	업무계획 5-가
Ⅱ. 공정한 경쟁원칙을 확립한다.		
Ⅱ-1. 디지털시장 등에서의 시장반칙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한다.		
	①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공정한 거래여건 조성	국정29-3번
	② 혁신분야 및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불공정행위 및 부당 표시광고행위 시정 **[민생]**	국정29-3번
	③ 공정경쟁 확립을 위한 정책수립 및 교육·홍보활동	국정29-3번
	④ 담합 행위 시정 **[민생]**	국정29-3번
Ⅱ-2. 부당내부거래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하고, 소유지배구조 및 거래관행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한다.		
	①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 및 대기업집단시책·공시의무 위반행위 제재	국정29-3번
	② 소유지배구조 및 거래관행의 자발적 개선 유도	국정29-3번
Ⅲ.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정당한 보상을 확보한다.		
Ⅲ-1. 중소기업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보장되는 거래환경을 조성한다.		
	① 하도급분야 공정거래기반 조성	국정30-2번
	②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등 하도급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	국정30-2번
Ⅲ-2. 유통 분야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고, 甲-乙간 공정한 거래기반을 마련한다.		
	① 가맹분야 불공정거래관행 개선 **[민생]**	국정30-2번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② 유통·대리점 분야 거래관행 개선 **[민생]**	국정30-2번
	③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시정	국정30-2번
Ⅳ. 소비자 안전환경을 조성한다.		
Ⅳ-1. 소비자 기만행위 등 불공정피해를 방지한다.		
	① 전자상거래・약관 분야 소비자피해 방지 **[민생]**	국정30-1번
	② 전자상거래분야 법위반행위 시정	국정30-1번
	③ 다단계・방문판매・할부거래 분야 소비자피해 방지	업무계획 3-가
	④ 다단계・방문판매・할부거래 및 약관 분야 법위반행위 시정	업무계획 3-가
Ⅳ-2. 소비자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한다.		
	①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	국정30-5번
	② 소비자권익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국정30-5번